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속기와 기록의 역사적 의미 고찰

2021. 8.

사단법인 한국형리더십개발원

박현모(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목 차>

I. 연구배경과 목적	1
II. 속기와 기록관리의 역사리의 정신	5
III. 조선시대 속기와 기록관리의 정신	15
IV. ‘기록 정신’을 지킨 사람들	26
1. 기록관리 역사 이정표 세운 사관 최견	26
2. 사관 민인생의 용기	28
3. 이황	32
V. 결론	35
참고문헌	38
 ■ 부록 : ‘기록 정신’ 관련 일차자료 선별	45
1. 역사기록 왜 하나?	47
2. 세종시대 실록편찬 원칙	51
3. 사관 천거기준	55
4. 사관이 근무하는 곳	57
5. 가장사초(家藏史草)	60
6. 시정기(時政記)	64
7. 궁궐 안 여성 이야기 기록	66
8. 사초의 보관과 관리	69
9. 선배 사관 이황의 생각	71
10. 실록 기록방식	74
11. 사관의 역사 평가	75

I. 연구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속기(速記)의 현재 좌표를 확인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속기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종적 변천). 특히 ‘조선왕조실록의 체제’를 정비한 세종시대 사람들의 ‘기록학’에 대한 생각에 집중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 속기 역사와 현황을 고찰할 것이다(횡적 비교).

속기의 종적 변천과 횡적 비교를 통해 현재 좌표를 확인하는 것은 한국 속기계(速記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속기사들이 각자 하는 일의 역사적인 뿌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보람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은 “무릇 정치를 잘 하려면 반드시 그 전 시대의 다스려진 것과 어지럽힌 것[治亂·치란]의 자취를 보아야 할 것이요, 그 자취를 보려면 오직 과거의 기록을 상고(詳考)하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실록 23년 6월 28일). 세종이 보기에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곧 지금 서 있는 좌표를 모르는 것과 같았고, 또한 장차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뜻했다.

우리나라는 속기법 창안 연도에 있어서 서양은 물론 같은 동양권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늦다. 이는 20세기 전반부를 일제 식민지하에서 보내야 했고, 해방 후에도 6.25 한국전쟁과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시절의 남조선과도입 법의원과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 내용을 속기 방법에 의해 기록·보존해 온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이경식 2011).

서양의 경우 19세기 중반부터 ‘완전한 속기법’이 시작되었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그보다 50년 정도 뒤떨어진 19세기 말부터 도입되었다(유순태 외 1998, 33-36쪽). 1837년 아이삭 피트맨의 <표음속기술>을 그 시작으로 삼을 경우 서양보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110여 년 늦게 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회의록 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영국이나 미국·호주에 견줄 만큼 선진화되어 있다(박현모 외 2021, 11-27쪽). 이는 건국 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 의회시스템을 보고 배우는 ‘후발 이익’ 측면과,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신라의 경우 진흥왕 6년[545년]의 기록) 조선 건국기 들어 체계적으로 정비된 역사 기록의 전통에서 그 저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세종시대 사람들은 “나라는 멸망시켜도 역사는 멸망시킬 수 없다[國可滅而史不可滅·국가멸이사불가멸]”고 생각했다(세종실록 6년 8월 12일). 그들은 왕과 재상도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까지도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 기록은 영원히 남아서 읽히고 회자(膾炙)될 것이라고 믿고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는[據事直書·거사직서]” 전통을 남겼다. 유명한 태종의 에피소드, 즉 ‘말에서 떨어진 사실을 적지 마라’고 지시한 것까지 기록하는 사관의 자세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여 전하려는 사명의식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나라 속기는 1) 모색기 2) 정비기 3) 확장기 4) 정보화기라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2002년 회의록시스템이 구축되고 ‘회의록’ 홈페이지의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는 데이터기반 입법 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70년 동안 한국 의회의 역사를 빠짐없이 담고 있는 국회회의록은 다른 역사기록물—가령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처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록의 전통을 갖고 있고 충실히 기록된 국회회의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관련 연구는 매우 저조하다(51편). 2021년 8월 현재까지 불과 9편의 석사논문과 31편의 연구논문 그리고 7편의 보고서가 있을 따름이다.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논문	보고서	합계
4	9	31	7	51

<표 1> 속기 관련 논저 현황(2021년 8월 현재)

이는 여러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콘텐츠 차원으로 볼 때 속기의 뿌리에 해당하는 조선왕조실록(이하 '조선왕조실록')과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의정사를 기록하는 속기사를 조선왕조 사초(史草)를 작성했던 사관(史官)에 비유하고 있지만(유순태 외 1998, 40쪽) 정작 사초를 기록했던 사관은 어떤 제도적 장치 아래서 일했고 그들의 사명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다음으로 전문학술지의 부재이다. 대한속기협회에서 펴낸던 <속기연구논문집>, <속기관련 연구논총>, <속기관련 자료·논문집>은 2002년 이후로 간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콘텐츠의 광맥을 찾지 못하고, 연구가 실릴 학술지가 없다 보니 속기 분야의 심층연구나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속기학술 세미나, 즉 1993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기학술회의¹⁾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발간할 경우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학 등 인접 분야와의 교류가 부족하다. 속기와 기록관리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아무리 속기를 충실히 해도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기록관리를 중시했던 중세 교회 사람들이 남긴 속담,

1)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자료집만 발간하고 있다.

즉 ‘문서 없는 수도원은 마치 무기 없는 무기고와 같다’라는 비유에서 보듯이 속기와 기록관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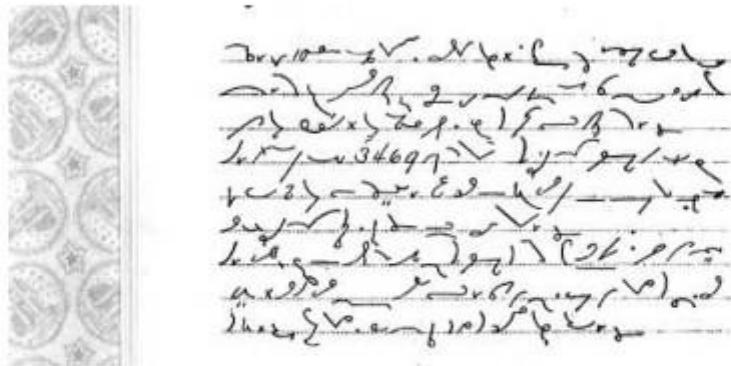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한국 속기계가 한 단계 도약할 디딤돌로서 속기와 기록학의 역사적인 뿌리와 정신을 재조명할 것이다. 제헌국회 이후 한국 속기 역사나 외국의 사례나 현재 상황도 살필 것이나 그 부분은 보조적인 것에 머물 것이다. 그보다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텍스트를 속기와 기록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속기의 역사적 뿌리와 함께 그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속기와 기록관리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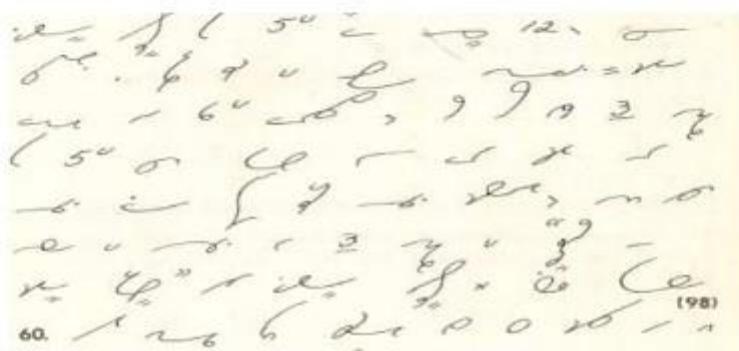
속기(速記, stenography), 즉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기의 의사표시를 어떤 특정의 부호문자인 속기문자로 정확하게 빨리 필기하여 이것을 일반 문자로 번문(翻文)하는 활동”(유순태 외 1998, 28쪽)의 역사는 고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아테네, 델포이 등에서 발견되는 기원전에 사용한 특수 부호나, 기원전 63년 10월 21일 로마 원로원의 정치가 키케로가 행한 ‘카타리나 탄핵연설’을 그의 고용인 타이로(M.T Tiro)에게 속기방식을 고안시켜 기록하게 한 것을 그 기원으로 삼는다(손숙자 외 1997). 머리글자와 끝의 글자를 적당히 약기(略記)해서 기록하는 타이로의 방법은 속기법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타이로의 이 약기법은 로마 원로원 의원들의 연설을 기록하는 데도 사용할 정도로 보급이 확산되었으며, 학교의 학생들과 일반인, 그리고 황제까지도 타이로의 약기법을 배웠다고 한다(유순태 외 1998, 33쪽).

세계를 갖춘 근대적 속기, “속기다운 속기법”은 1558년에 영국인 브라이트(Timothy Bright)와 1602년 윌리스(John Willis), 그리고 1837년 피트맨(Isaac Pitman)의 노력을 거치면서 발전되었다. 특히 피트맨은 종래의 기음적(記音的) 선상(線上) 필기법에서 벗어나 <표음(表音) 속기법>(Stenographic Sound)을 저술했다. 속기학원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 현재 서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기법 중 대부분이 피트맨식을 근거로 고안되었다. 이점에서 타이로는 ‘속기계의 원조(元祖)’, 피트맨은 ‘서양 속기계의 중흥자’라고 일컬어진다(유순태 외 1998, 35쪽).

피트맨식과 함께 1888년에 그레그(J.R Gregg)에 의해 창안된 그레그식 속기법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기법이다.



<그림 1> 피트맨(Pitman) 속기(* 출처 : 구글 이미지)



<그림 2> 그레그(Gregg)식 속기법(* 출처 : 구글 이미지)

동양의 경우 1882년에 일본인 다큐사리[田鎮鋼紀·전쇄강기]가 속기 방식을 창안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다큐사리는 자신이 창안한 속기법으로 1882년 10월 28일 제1회 속기강습회를 개최했다. 그의 속기법은 1890년 일본 제국의회 개원과 동시에 귀족원과 중의원 의회에서 활용되었다. 중국에서는 1895년 채석용(蔡錫勇)이 창안한 전음쾌자(傳音快子) 속기법이 중국 정부에서 채택되었다. 이 속기법은 1910년 중국의 <정치관보(政治官報)>에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개량·보급되고 있다(유순태 외 1998, 35-36쪽).

우리나라에서는 1909년 박여일 씨가 하와이에서 <신한민보(新韓民報)>에 '조선속기법'을 창안 발표한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박여일 씨는 그 후 다수의 속기방식을 창안 발표했으나, 그의 속기법은 일

제 치하에서 실용화되지 못했다. 속기법이 직접 실무에 활용된 것은 해방 이후부터이다. 해방과 더불어 일파식·한국식·서울식·고려식·동방식·세종식 등 많은 속기방식이 앞다투어 창안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속기사 양성기관이 설립되어 후진이 양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속기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비록 대다수가 일본어 속기를 하던 사람이었으나, 6명의 우리나라 속기사가 1946년 12월 11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예비회의부터 속기록을 작성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속기의 예이다.

여기서 보듯이 속기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속기 인재의 양성이다. 아무리 의회정치가 활성화되어서 속기가 필요해도 그를 뒷받침할 인재가 없으면 속기의 발달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1946년 6월에 결성된 '조선어속기학회'를 비롯해 '일파식 속기사 양성소'(1946.9 개설), 중앙속기학원(1947.7 설립) 등 초창기 속기학원들의 노력은 의미 있다. 속기인재 양성과 관련해 1951년 12월 개설한 대한속기고등학교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속기고등학교는 1961년 5·16혁명으로 폐쇄될 때까지 10회에 걸쳐 31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우리나라 속기 인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 우수한 속기사들이 이 학교에서 배출되었다.

속기 인재 양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역시 '국회속기사양성소'(이하 '양성소')의 설립이다. 이 양성소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속기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1968년 2월 국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회속기사양성소설치규정'이 통과되었고 국회사무처 내에 국비로 운영하는 속기사 양성기관이 설립되었다. 양성소는 이후 30여 년간 많은 인재를 배출했는데, 국회사무처 속기과(지금의 의정기록과)에서 운영하다가 1994년 국회의정연수원이 출범하면서 그 이듬해인 1995학년도부터 국회의정연수원 연수과 교육 과정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1997년에는 속기록의 신속성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기존의 수필속기에서 전산속기로 교육방식이 일대 전환되었다. 일명 빠른손속기워드(경영소프트 개발)라는 컴퓨터속기를 정식 교육방식으로 채택하였는데, 당시 속기학 강의를 위해 흥기표·손숙자 강사 등이 위촉되었다. 컴퓨터속기교육은 1년간 진행된 후 IMF가 발발한 1998년에는 학생 모집을 중단하여 국회속기사양성소는 자동 폐교되었다(유순태 외 1998, 92-94쪽).

기록관리의 역사는 속기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다. 초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점토판에서 발견되는 아시리아 왕국의 기록 등이 그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기록관리의 제도가 있었는데,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통치의 중요기록을 아레오파고(Areopago)에 보관했다. 기록보존소는 공공건물 안에 위치했으며, 기록보존소의 담당자는 표면에 석회 등을 바른 나무판 장부나 파피루스 등에 기록된 내용을 관리했다고 한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36-37쪽).



<그림 3> 아테네 아레오파고(Areopago)(* 출처 : 구글 이미지)

기록관리의 전통은 고대 로마시대에 들어 구체화되었다. 앞에서 언

급한 타이로(M.T Tiro)의 속기, 즉 BC 63년 로마의 키케로가 ‘카타리나 탄핵연설’을 속기방식으로 기록하게 한 것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 산출되었는데, 그중 공공기관 기록물을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로마시대에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기록물보존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기록물의 안전을 보장하고(보존) 원본성을 확보하려는(신뢰)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 중 전자, 즉 보존 기능은 주로 황제의 기록물을 잘 보관하기 위해 중시되었다. 그것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Corpus Iuris Civilis)에 규정되기도 했다.

여기서 보듯이 로마에서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은 황제 권위를 높이려는 필요와 맞물려 있었다. ‘황제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성한 장소, 특히 성구실(聖具室, Sagrestia)에 기록물을 보관하는 전통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조선 초기에 세종이 선원전(璿源殿)이라는 건물을 지은 취지와 비슷하다. 즉 1438년(세종 20)에 세종은 경복궁 안에 선원전을 지어 역대 왕과 왕비들의 초상화 및 왕실 족보인 <선원록(璿源錄)>을 봉안(奉安)하게 했다(세종실록 20년 5월 19일). 이는 ‘선왕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전국에 국가기록보관소인 사고(史庫)에 초상화와 <선원록>을 보관·관리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 4> 조선왕실 족보 ‘선원록(璿源錄)’

(* 출처 : 구글 이미지)

이처럼 왕이나 황제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하기 위해 시작한 기록관리 제도는 점차 기록물보존소에 공공성을 갖게 했다. 또한 그곳에 기록된 기록을 ‘신뢰’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록물보존소의 기록은

원본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보존소 기록물에 대한 신뢰는 문서 이관 행위를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관리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 문서에 부여된 공신력은 특히 공공기록물인 경우, 필요한 서식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대상 지역이나 인물에게 발송되었다고 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 문서가 권위 있는 기록물보존소에 보관되고, 이관 행위까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공신력이 획득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적어도 유럽의 경우, 이후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김정하 2013, 60-61쪽).

유럽에서 기록관리 체계가 잘 발전된 나라는 근대 기록관리를 주도한 프랑스와 그 영향을 받은 영국이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1794년 6월 세계 최초의 근대적 기록관리법인 ‘메시도르 7일법’을 제정했다. 이 법 제정을 통해서 프랑스는 혁명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과 혁명기 의회 기록물을 보호하고 시민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가 중심의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행정조직으로 기록관리부(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를 신설했는데, 여기에서는 기록관리 정책, 기록물 평가와 열람 서비스, 국가 기념행사를 담당한다. 이 중에서 기록물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공공기록물의 수집과 통제, 전자기록관리 관련 업무, 중앙 행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등을 담당하며, 기록물 평가와 열람 서비스 영역은 디지털기록물의 접근과 유통, 기록관리 관련 학술연구, 장기보존을 위한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 센터를 담당한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46쪽).

영국의 기록관리 역사에서 중요한 기관은 국립보존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 : TNA)이다. TNA는 법무장관 산하 기관으로 영국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보관한다. TNA는 런던 남서쪽 리치몬드의

런던 보로우에 있는데, 1977년에 문을 열었다. TNA는 영국정부와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대해서 공식적인 아카이브이면서 동시에 출판 업무까지 하고 있다. 또한 정보 및 기록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기관이다. 문화적·학술적 문화유산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47-48쪽).



<그림 5> 영국 국립보존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 : TNA) (* 출처 : 구글 이미지)

동아시아의 경우 기록관리의 역사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인접 국가이면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한국과 일본에서도 중국과 비슷한 형태로 기록관리 전통이 유지되었다. 중국의 기록문화 역사는 BC 8세기에서 BC 3세기에 이르는 춘추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秦)나라(BC.221 ~ BC.207)에 이르러 국가에서는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법률과 세금 관련 문서를 중요 기록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대적 기록관리가 시작된 것은 '중국인민공화국당안법'(中國人民共和國檔案法, 이하 '당안법')이 제정된 1986년부터다(1996년 개정)(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50쪽).²⁾

2) 중국에서는 기록학을 당안학(檔案學)이라 부른다. 당안이란 서류를 보관하는 시설, 즉 선반이나 사각형의 긴 탁자를 뜻하는데, 공공기록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공공기록물을 '역사당안'으로, 그 이후의 것을 '현행당안'으로 부른다. 인민대학에서는 1954년 중국 최초로 4년제 '역사당안학과'를 개설하였고, 1955년에는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당안학원'을 설치함으로써 학부과정을 비롯해 석·박사과정까지 갖추고 있다(덩사오싱 외 2003, 8-9쪽).

일본의 경우 기록관리 측면에서 볼 때 국립공문서관의 역사가 중요하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은 메이지시대(1868-1912) 이후 여러 기관에 흩어져 보관하던 문서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1971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 기록관리를 담당하던 기관은 태정관(太政官) 내부 도서관(1873년 설치), 내각문고(1885년 설치), 궁내청 서릉부(書陵部, 1949년 설치) 등이었다. 이 중에서 내각문고의 자료에는 에도막부의 기록 등 중요한 공문서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국립공문서관에 이관되어 이용하고 있다. 특히 궁내청 서릉부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의학서적인 <향약구급방>(고려 고종 때 편찬)과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의방유취> 등이, 국립공문서관에는 <역대세년가>, <세의득효방> 등이 소장되어 있다(박현모 2017, 89쪽).



<그림 6> 일본 궁내청 서릉부(書陵部)(* 출처 : 구글 이미지)

2001년 국립공문서관 산하 조직으로 아시아역사자료센터가 설립되었는데, 이 센터에는 국립공문서관 및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등 국가기관 보관 역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53쪽).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서기 600년(고구려 영양왕 11년)에 이문진이 <신집(新集)> 5권을 만든 것을 비롯해, 백제와 신라에서도 국사(國史)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 역시

987년(성종 6년) 중앙과 지방의 공문서 서식과 교류에 관한 규정인 공첩상통식(公牒相通式)이 <고려사>에 남아 있어서 기록물이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기록관리 제도는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는데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공문서 관리 사항이 그것을 보여 준다.

<경국대전>은 공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문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경국대전> '장문서(藏文書) 조(條)'에서는 공문서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중앙 및 지방 관아의 문서는 각 관청이 직접 유형별로 나누어 종합한 다음 부전지(附箋紙)를 달아서 각기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철된 문서는 분실되거나 흩어지기가 쉬워서 책자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 각 관아의 중요한 문서는 그 원문을 등록한 후 관련 관아에 배포하여 행정상 참고 자료로서 쉽게 이용하고, 사고로 문서가 인멸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문서와 승문원의 문서는 찬집 인출하여 해당 관아와 의정부 및 사고(史庫)에 보관하였다(김혁 2002, 100-105쪽).³⁾



<그림 7>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 출처 : 구글 이미지)

3) 조선시대 문서류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뉜다. 공문서는 국왕문서·관부문서·외교문서·왕실문서 등이 있고, 사문서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문서의 종류로는 문서류, 일기류, 의궤류, 등록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일기류는 각 관공서에서 일별로 업무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승정원일기>, <규장각일기>, <내각일력(內閣日曆)> 등이 대표적이다. 의궤류는 왕실이나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우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는 근대적 기록관리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 이유는 우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실록의 전통’이 중단되었고, 6·25 한국전쟁 등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공문서와 고문서가 훼손되거나 해외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정부차원에서 기록관리를 시작했지만(정부처무규정 1949.7 등) 아직까지는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처무규정’(1911.7)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형편이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한국 기록관리 체계는 비로소 근대적 모습을 갖추게 된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행정업무의 효율화 차원에서 미국식 사무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 정부는 처음으로 공문서의 종류를 조사하여 각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표준화했고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했다(1961.9).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제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국가기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점점 업무가 방대해져서 2004년부터는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대통령령 제18392호) 국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62-68쪽).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의 전말, 경과, 소요비용, 인원, 의식절차, 행사 후의 논상(論賞) 등을 기록해놓은 중요 문서이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59쪽).

III. 조선시대 속기와 기록관리의 정신

삼성그룹의 고(故) 이건희 회장은 “50년 된 회사와 5년 된 회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과거 데이터의 차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그때그때의 경영자와 공장장, 몇몇 기획하는 사람의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데이터와 역사, 이것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에 따르면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그대로 모아 둔 “생 데이터”이다. 기록을 남겨야 뒷사람들이 먼저 사람들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텐데, 그 기록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무의미하거나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리가 안 되고 세련되게 하지 않아도 좋으니 생 데이터, 생 정보를 남겨” 놓으라고 강조했다(이건희 1993, 74-77쪽). 얼핏 보기에도 기록이나 역사에 무관심할 것 같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역사기록을 데이터로 간주하고 매우 중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준다.

이렇게 볼 때 세종시대 사람들이 기록과 관리에 대해 보인 태도는 실로 놀랍다. 세종은 정도전 등이 편찬한 <고려사>를 개수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사필(史筆)을 잡는 자가 이에 성인이 취하고 버리신 취지를 엿보지 못할 바엔[既不能窺·기불능규 聖人筆削之旨·성인 필삭지지] 다만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라[據事直書·거사직서]”(세종실록 5년 12월 29일). 이 말 바로 앞에서 세종은 성인, 즉 공자가 <춘추>를 지어서 (다른 역사가들의) 참람한 호칭을 깎아내린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자이니 그렇게 높이고 낮추는 안목이 있었지만, 그런 안목이 없다면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게 옳다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다. 정도전 등이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임의대로 호칭을 고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세종에 따르면 현재를 기록하는 사관이 할 일은 ‘오로지 사실에 의

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면 "찬미하고 비난할 것이 스스로 나타나서 족히 후세에 전하고 신빙할 수 있을 것[褒貶自見 足以傳信於後·포폄자현 족이전신어후]"이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전신어후(傳信於後)'이다. 전신어후란 후대에 신뢰를 전달한다. 또는 전달하여 후대의 신빙(信憑)을 얻는다는 뜻이다. 믿고 읽을 수 있는 역사를 남기려면 기록자가 견해 개입을 억제하고, 온전히 사실을 담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대 사람들은 "나라는 멸망시켜도 역사는 멸망시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세종실록 6년 8월 12일). 왕과 재상도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까지도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 기록은 영원히 남아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연구되고 회자(膾炙)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따라서 사실을 바르게[直] 기록하는 일, 즉 거짓되거나 치우치지 않으면서도[올바른 기록], 장황하게 기록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게[정확한 기록] 기록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후대인들이 그 역사 기록을 믿지 않고 외면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록을 정성들여 남긴다 해도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마천(司馬遷)의 역사 서술의 자세, 즉 "지난 일들을 서술 할 때, 후대인들을 깊이 의식해야 한다[述往事·술왕사 思來者·사래자]"는 태도와 상통한다.(<한서(漢書)> 권62, 사마천전).



<그림 8> 세종실록

'동양 역사학의 아버지' 사마천은 <사기(史記)>를 편찬하면서 '밝은

세상을 잘 계승시키는 일[能紹明世·능소명세]’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했다. ‘태사공 자서(太史公自序)’에서 그는 공자나 주공처럼 뛰어난 인물들이 꿈꾸고 이루었던 성대한 시대를 기록하고 전해서 “난세를 다스려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撥亂世反之正·발란세반지정]”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큰 책무라고 말했다.

나라 다스리는 자는 <춘추>, 즉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되는데, (역사를 모르면) 앞에 참소하는 자가 있어도 알지 못하고 뒤에 역적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 신하된 자도 <춘추>를 알아야 하는데,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일상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옳은 방법을 모르고[守經事而不知其宜·수경사이불지기의] 사태의 변화를 만났을 때 임기응변으로 대처 할 줄 모르게 된다[遭變事而不知其權·조변사이불지기권](사마천, <사기> 태사공자서).

한마디로 올바른 ‘판단 기준’도 역사에서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해법’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사마천의 믿음이었다. 세종은 그런 맥락에서 “무릇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 시대가 남긴 치란(治亂)의 자취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 자취를 보려 하면 오직 역사책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 속 리더십 사례를 편찬하게 했다. 세종은 또한 알려진 것처럼, 왕과 재상 등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실록을 볼 수 없는 좋은 전통을 세웠다. 후대인들이 그 역사 기록을 믿지 않고 외면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록을 정성 들여 남긴다 해도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믿고 읽을 수 있는 역사 기록을 위해 세종이 세운 원칙이 있다. 그것은 국왕이라도 자기 재위 기간의 기록은 물론이고 그 이전 왕들의 실록을 보지 못한다는 전통이다. 세종은 자기 아버지, 태종에 대해 실록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그중에서도 제1, 2차 왕자의 난과 관련한 태종의 역할을 몹시 알고 싶어 했다. 권력 쟁탈 과

정에서 자기 동생들을 죽이거나 쫓아 보낸 골육상잔(骨肉相殘)에 대해 사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

1431년 3월, <태종실록>의 편찬을 마무리할 즈음, 세종은 “전대(前代)의 제왕들이 선왕(先王)의 실록을 친히 보지 않은 자가 없는 것 같은데 (...) 내가 한번 <태종실록>을 보려 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우의정 맹사성 등은 “전하께서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 고칠 것이며, 사관(史官) 또한 사실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후세에 그 진실함을 전하기” 위해서는 절대 실록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세종은 “그렇겠다.” 하고 물러섰다 (세종실록 13년 3월 20일).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정말 궁금했던 듯하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438년에 세종은 다시 “자손으로서 조상의 기록을 알지 못하면 장차 무엇으로 감계(鑑戒 : 살펴서 조심하는 일)를 삼을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황희 등은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세종도 손을 들고 말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통이 되어 후대 왕들이 실록을 보지 못하는 전거가 되었다(세종실록 20년 3월 2일).

<세종실록>은 세종이 승하한 지 2년 뒤인 문종 2년(1452년)에 편찬을 시작해, 단종 2년(1454년)에 완성되었다(2년 1개월 소요). <세종실록>은 조선 후기의 <정조실록>과 함께 실록 편찬자[史官·사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런 평가와 가장 대조되는 것은 <단종실록>이나 <명종실록>이다. 예를 들어 단종실록 1년 10월 10일 자 기사를 보면, 사관은 왕을 “노산군”이라고 부르고, 수양대군을 “세조”라고 칭하고 있다. 이것은 세종의 직서법을 어긴 것이다. 또 <명종실록> 10년 11월 20일 자 기사를 보면 남명 조식을 변호하는 정종영의 말을 소개하면서 사관이 실록 기사 중간중간에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삽입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부합되는 인물은 “성품과 행실이 단정하고 무게가 있으며,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유일의

선비”라고 두호하는 반면, 노선이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성품이 간사하고 표독하며, 뱃속에는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 기록한 <명종실록> 속 사평은 오늘날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는 그 대목을 읽어 볼 수 없는 기록이 되었다. 세종의 ‘실록 기록 정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간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면 좋은 역사 기록은 어떤 것인가? 세종이 정립한 실록 전통을 기준으로 볼 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첫째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유명한 태종의 에피소드, 즉 ‘말에서 떨어진 사실을 적지 마라’고 지시한 것까지 기록하는 사관의 자세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준다. 세종이 왕 앞에 상시 대기하는 사관과 승정원의 관리는 물론이고 집현전 학사까지도 어전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한 것 역시 사실을 상세하게 적어서 후대가 감계(鑑戒) 삼기 좋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 둘째는 역사 기록에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서 기록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종이 <태종실록>을 보려 했던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관계보다는 사평(史評)이었을 수 있다. 제1, 2차 왕자의 난과 관련된 태종의 역할에 대해서 사관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을 것이다. 실록의 기초가 되는 사초(史草)에는 사관이 어전회의에서 기록한 것을 정서해서 제출한 ‘춘추관 사초’와 기록한 원본을 집으로 가져간 ‘가장(家藏) 사초’가 있다. 이 중에서 후자, 가장 사초에는 기록한 내용에 대한 사관의 개인 의견을 적을 수 있다. 어전회의를 기록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적을 수도 있다(오향녕 2018, 316-317쪽: 41-43쪽).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종 때부터 사초 관련해 정해진 원칙이 있다. 그것은 사초를 국가에서 거두는 시기인데, 처음에 왕은 분실의 염

려가 있으니 사관이 죽으면 바로 사초를 거두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관들은 태조 때 전례를 들어 국왕이 죽은 다음에 사초를 수납하기로 건의해서 윤허받았다(세종실록 6년 12월 1일). 또 다른 원칙은 사초의 원본성을 훼손한 자나 사초 내용을 누설한 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세종 때 성립된 사초관리[史草禁防·사초금방] 6 조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의 흔적을 없애려고 사초첩 전부[卷綜·권종]를 훔친 자는 왕명 [制書·제서]을 도둑질한 것으로 논죄하여 목 범[斬全盜卷綜者 以盜制書律論斬·참전도권종자 이도제서율논참]. ② 도려내거나 긁어 없애거나 먹으로 지우는 자 역시 ‘왕명을 찢어버린 것으로 논죄하여 목 범 [截取磨擦墨抹者 以棄毀制書律斬·절취마찰묵말자 이기훼제서율참]. ③ 동료 관원으로서 (사초를 훔치거나 지운 사실을)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한 등(等)을 감(減)함(즉, 목 졸라 죽이거나 유배형에 처함)[知而不告者 依律減一等·지이불고자 의율감일등]. ④ 사초 내용을 외부인에게 누설하는 자는 ‘왕을 가까이 모시는 관리[近侍官·근시관]가 중요한 기밀을 남에게 누설한 것’으로 논죄하여 목 범[史草事情漏洩外人者 以近侍官員漏洩機密重事於人律斬·사초사정누설외인자 이근시관원누설기밀중사어인율참]. ⑤ 위 사항으로 죄 지은 자는 비록 사면 받더라도 정범(正犯)은 직첩을 빼앗고 영구히 서용하지 말고, 만약 그가 죽었으면 직첩을 추탈(追奪)함[正犯人奪告身 永不敍用·정범인 탈고신 영불서용], [犯者物故 亦行追奪·범자물고 역행추탈]. ⑥ (누설한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자와 누설한 자는 직첩만 거둠[知而不告及漏洩者 只收職牒·지이불고급누설자 지수직첩](세종실록 31년 3월 2일).

여기서 보듯이, 사초는 국서(國書),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 간주되었다. 사초 전부를 훔친 자는 물론이고, 몇 글자만 도려내거나 지운 자도 참형이라는 최고형을 받았다. 사초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자 역시 참형 대상에 포함되었다. 심지어 사초를 지우거나 그 내용을

누설한 사실을 고발하지 않는 자도 중형에 처해졌다. 역모죄에 준하는 형벌이 사초 관련 범죄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이 이처럼 사초 훼손한 자에 엄형을 내리도록 한 것은 그 직전에 핵심 인재들의 참람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초관리 6조목 제정 열흘 전의 실록 기사를 보면 권제·안지·남수문 등이 <고려사>를 고치거나 삭제한 죄로 처벌받았다. 이 중에서 권제(1387 ~ 1445)는 자기 아버지 권근의 일을 왜곡(歪曲)되게 쓰거나 삭제하는 등 사초를 심하게 왜곡한 사실이 탄로나서 직첩을 박탈하거나 시호(諡號)를 추탈(追奪) 당했다(세종실록 31년 2월 22일).

사초를 훼손하거나 누설한 죄는 세종 사후에 더욱 엄하게 다스려졌다. 예컨대 예종 때인 1469년 사관 민수(閔粹)는 <세조실록> 편찬과정에서 춘추관 보관 사초를 사관 강치성에게 부탁해 몰래 꺼냈다. 그 연유를 묻는 왕에게 민수는 자신이 나쁘게 쓴 양성지가 춘추관의 고위직인 지사(知事 : 종2품)에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고쳤다[畏而改之·외이개지]”고 실토했다(예종실록 1년 4월 24일). 결국 민수는 장(杖) 100대를 맞고 제주 관노가 되었고, 역시 사초를 고친 원숙강과 강치성은 사형을 당했다.⁴⁾

흥미로운 것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편년체 역사기록에서는 사평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사(正史)인 <고려사>에는 사평이 있으나, 분실된 <고려실록>이라는 편년체 역사에는 사평이 없었다고 한다.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를 쓴 오항녕 교수에 따르면, 사관의 평(commentary)은 성리학적 인간의 역사편찬 방법이다. 성리학 고전을 공부한 문관 출신 사관들은 공자의 포폄(褒貶 : 옳고 그름이나 잘하고 못했는지를 판단하여 평가함)을 본받고, “강(綱)에서 명분을 바르게 하고 목(目)에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는[正名分 詳事實·정명분 상사

4) 민수가 사형을 면한 것은 외아들이라는 것을 예종이 배려했기 때문이다. '민수 옥사'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오항녕 2018, 43-49쪽 참조.

실]”(세종실록 5년 12월 29일) 주희의 역사편찬 방법을 계승했다. 그들이 포폄과 정명의 원칙을 본받아 군신의 언행과 정책에 대해 자기 의견을 덧붙인 것이 사평이다. 고려 중기 때 편찬된 <삼국사기>(1145년)에는 사평이 없다. 하지만 세종 때 편찬된 책 <치평요람>(1445년 완성)이나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1435년 완성), 그리고 문종 초년의 <고려사절요>(1452년 완성) 등 역사서에는 집현전 학사를 포함한 사관들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 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태도는 ‘경사(經史)의 학습법’, 즉 역사책을 읽거나 기록을 남길 때 경전에서 배운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논평을 남기는 전통을 만들었다는 것이다(오항녕 교수 자문, 2021년 7월 6일).⁵⁾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평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록 기사에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전후 맥락을 알게 하는 내용보충형이다. 성종 때 한명회(성종실록 12년 6월 26일), 연산군 때 홍귀달(연산군일기 10년 6월 16일), 인조 때 김류와 이귀 사례(인조실록 7년 7월 24일) 등이 그 예다. 이 경우 해당 인물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이후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었는지를 기록하여 해당 기사를 이해하도록 돋는다.

둘째, 왕이나 신하들 언행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인물 포폄형이다. 성종의 잘못된 인사를 비판한 이파(李坡)(성종실록 12년 5월 26일), 성종 때 성리학자 이심원 평가(성종실록 8년 12월 2일), 명종 때 내시 최한형 비판(명종실록 14년 12월 29일), 선조 때 청백리 이원익 칭찬(선조실록 34년 5월 16일), 영조 때 화가 진재해 사례(영조실록 1년 4월 21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원익이나 진재해의 경우처럼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

셋째, 과거제도, 사면제도, 의적 등에 대한 사관의 생각을 기록하는

5) 현재 국회나 지자체의 속기사는 기록(dictation)만 할 뿐, 기록에 대한 자기 의견(commentary)을 덧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제도나 법 포폄이다. 중종 때의 잣은 사면제도(중종실록 3년 1월 30일), 명종 때 과거제도(명종실록 15년 4월 20일)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명종 때 도둑 임꺽정을 소탕하겠다고 나서는 조정을 비판하는 사평도 인상적이다(명종실록 16년 10월 6일). 그런가 하면 영조 대 인물인 민진원에 대한 사평을 다시 평가하는 것(meta-commentary)도 있다(영조실록 12년 11월 28일).

우리 역사에서 사관(史官)제도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려 올라간다. “국사(國史)란 군신의 잘못을 기록하여 영원토록 그에 대한 포폄을 보이는 것”이라는 이찬 이사부의 말(<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6년)과, “백제가 개국한 아래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근초 고왕 30년) 와서 박사 고흥이라는 인재를 얻고서야 ‘서기(書記)’가 있었다”는 <삼국사기> 백제본기2 등이 그 근거다. 하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의 존재가 곧 실록 편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록은 대화나 사실의 기록(dictation)을 비밀을 유지하며 간직하다가 국왕 사망 등 일정 시기에 (기록자와 다른) 책임자들의 편찬을 거쳐 관청[史館·사관]에 보관되어야 그 이름을 얻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공문서들이 권위 있는 기록물보존소에 보관되어야 원본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실록 역시 사관(史館)이라는 보존소에 안전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실록 전통은 고려 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 기관에서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안전하게(누설 및 분실 방지) 보관하는 제도가 고려 초기부터 생겼기 때문이다. “춘추관은 당대 정치를 기록하는 일을 맡는다. 국초에는 사관이라고 불렀다”는 <고려사>의 기록(백관, 춘추관)이 그 근거다. 또한 경기도 여주 고달사에 있는 광종26년(975년)에 제작된 원종대사 혜진(慧眞)의 탑비를 지은 김정언의 직명이 “감수국사(監修國史)”로 기록된 것도 고려 초에 사관(史館) 제도가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기거주(起居注)라 불린 8명의 정5

품 관리는 국왕에 대한 간쟁과 왕 주변의 일을 기록하였고, 임기가 되면 그동안의 사초를 정리해 1부는 사관에 납입하고[時政記·시정기] 다른 1부는 자기 집에 보관했다[家藏史草·가장사초]. 실록을 편찬할 때가 되면⁶⁾ 춘추관에 보관되어 있던 시정기와 사관을 역임한 사람 집에 있는 가장 사초 등을 수집했다. 실제로 1389년(공양왕1년) 3월 왕은 사관으로 하여금 “각각 사초(史草) 2부를 기록하게 하되, 임기가 다 되어 다른 관직으로 옮길 때에는 1부는 사관(史館)에 납부하고[一納于館·일납우관] (나머지) 1부는 집에 보관하게 하여[一藏于家·일장우가] 뒷날 참고에 대비하게 하십시오[以備後考·이비후고]”라는 사관 최견(崔鑑)의 제안을 수락하고 있다(<고려사> 열전 권50, 공양왕 원년(1389) 3월). 편찬된 실록은 춘추관의 경사고(京史庫) 외에 해인사의 외사고(外史庫)에 보존했으며 영구전승을 위해 3년마다 포쇄(曝曬)하는 전통도 고려 시대에 수립되었다(배현숙 2002, 32-41쪽).

이처럼 고려시대부터 어전 대화 속기를 포함해 중요한 공공문서는 실록의 이름으로 편찬·보관·관리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 특히 태종과 세종시대를 거치며 ‘실록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박현모 2019, 32-35쪽). ‘실록의 체제’란 앞에서 살폈듯이 첫째, 왕 앞에 상시 대기하는 사관과 승정원의 관리는 물론이고, 집현전 학사까지도 어전 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한 제도를 말한다(풍부한 기록). 둘째, 세종 때부터 실록은 전국 네 군데의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되었다. 만약 세종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선왕조실록>은 <승정원일기>처럼 임진왜란 때 불타고 말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더라면 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셋째, 역사기록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통을 수립해서 역사기록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사실에 의거해 직서한[擧事直書·거사직서] 다

6) 고려실록은 조선왕조실록과 달리 국왕 사후에 편찬되지는 않았다.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성종·목종의 7대에 걸친 실록을 1013년 수찬관(修撰官) 황주량 등이 국왕 현종의 명을 받아 <칠대실록> 편찬을 시작하였고 1034년(덕종3) 완성했다(<칠대사적기(七代事蹟記)>라고도 불림). 그런가 하면 <현종실록> <덕종실록> <예종실록> 등처럼 국왕별로 편찬되기도 했다.

음 후세의 평가를 기다린다[傳信於後·전신어후]"는 기록정신이 그것이다.

그런데 ‘실록의 체제와 철학’은 저절로 수립되는 게 아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왕이나 재상처럼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관은 “가까이하기 싫은[不近·불근]” 존재였다(정종실록 1년 1월 7일). 태종처럼 역사기록을 중시하는 국왕조차도 “(왕이 쉬는 공간인) 편전(便殿)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사관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태종실록 1년 4월 29일). 따라서 때론 왕명을 거스르거나 유배형을 감내하면서까지 ‘곧게 [直·직] 기록하는’ 자세를 견지한 사관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기록 정신’을 지킨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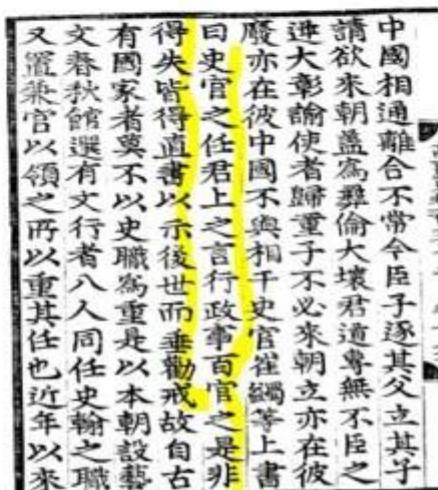
역사를 살펴보면 실록의 전통 혹은 곧게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려는 인물은 매우 많다. “군왕(君王)의 선악(善惡)과 신자(臣子)의 충사(忠邪)와 국가의 안위(安危)와 백성[人民]의 치란을 모두 들추어내어 권계(勸戒)를 삼기 위해[皆不得發露 以垂勸戒·개불득발로 이수권계]”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金富軾, 1075 ~ 1151)이 그 한 예다(김부식, <삼국사기> 진 삼국사기 표(進三國史記表)). 고려말에 “사관으로 하여금 교대로 곁에서 모시게 하여 좌언과 우사를 모두 기록하여 만세에 내리십시오”라고 말한 조준(趙浚, 1346 ~ 1405) 역시 ‘기록 정신’을 지킨 사람이다.

1. 기록관리 역사 이정표 세운 사관 최견

속기와 기록 관련 ‘전통’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 언급할 사람은 최견(崔鐸, 미상 ~ 1437)이다. 최견은 1385년(우왕11) 생원시에 장원으로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고, 1389년(공양왕1)에 예문춘추관 검열(檢閱)을 역임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사관의 직무와 사초(史草) 보관에 대해 건의하여 왕의 수락을 받아냈다. 그에 따르면 “사관의 임무란 임금의 언행(言行)과 정사(政事), 백관(百官)의 옳고 그름과 득실(得失)을 모두 있는 그대로 기록해[皆得直書·개득직서] 후대에 보여서[以示後世·이시 후세] 권장과 경계를 삼으려는 것[而垂勸戒·이수권계]”이다. 이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관의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고려 역시 예문춘추관을 설치하고 문행(文行)이 있는 사람 8인을 선발하여 사관과 문한(文翰)의 직무를 맡기고 또한 겸관을 두어 이를 관할하게 했다.

최견은 기록한 것을 잘 보관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사관들은 각각 사초(史草) 2부를 기록하되, 임기가 다 되어 다른 관직으로 옮길 때면

1부는 사관(史館 : 예문춘추관)에 납부하고[一納于館·일납우관] (나머지) 1부는 집에 보관하게 하여[一藏于家·일장우가] 뒷날 참고에 대비하게 하자는 말이 그것이다. 그는 아울러 충실한 기록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모든 부처로 하여금 수행한 일을 상세히 실록을 담당하는 예문춘추관에 보고해서 기록 근거로 삼게 할 것도[以憑記錄·이빙기록] 건의했고, 왕은 모든 제안을 수락했다(<고려사> 열전 권50, 공양왕 원년 (1389) 3월).



<그림 9> ‘고려사’ 열전 중 ‘최견의 제안’ 부분

공양왕 원년(1389)의 이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관리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보여준다. 우선 그는 ①역사기록의 내용과, ② 기록한 것을 장차 읽을 주체, ③ 그리고 기록해서 얻으려는 목표를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사관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皆得直書·개득직서]’(① 내용).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읽을 주체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 장래 세대이다[以示後世·이시후세](②주체). 이를 통해서 사관은 당대 ‘자리에 올라 결정을 내리는 인물들로 하여금’ 권장과 경계를 삼으려는 게 역사기록의 목표[而垂勸戒·이수권계](③목표)라는 게 최견의 말이었다. 실제로 최견의 이 건의는 조선 건국 후 <경국대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오향녕 <실록이란...> 204쪽).

2. 사관 민인생의 용기

최견이 건의한 사관의 직무, 즉 임금의 언행과 정사, 백관의 옳고 그름과 득실(得失)을 모두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일은 현실에서 결코 쉽지 않았다. 세종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왕들은 거의 대부분 사관 접근을 꺼리거나 금지하려 했다.

민인생(閔麟生)은 태종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려다 유배까지 간 사관이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 사관 민인생은 국왕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끝내 따라다니며 기록했다. 1401년 당시 태종은 개경 수창궁(壽昌宮)에 있었는데, 무신(武臣) 10여 인을 거느리고 강 연안에서 매를 놓고 날이 저물어서 환궁했다. 그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민인생을 태종이 나무라자 공신 이숙번(李叔蕃)은 '사관 직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그를 꾸짖지 말라고 당부했다(태종실록 1년 3월 18일).

민인생에 대한 태종의 불만은 그다음 달에 표출되었다. 수창궁 편전인 보평전(報平殿)에서 태종이 정무를 처리하는데 민인생이 '정전에는 입시(入侍)해 기록해도 되지만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왕명을 어기고 뜰[庭·정]로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고 묻는 왕에게 민인생은 전날 문하부(門下府)에서 사관 입시를 요청했고, 전하께서 윤허하셨기에 들어왔다고 대답했다. 앞의 이숙번의 말에서도 보듯이, 당시 신하들은 왕의 뜻과 달리, 국왕이 있는 곳이면 항상 사관이 따라다니며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인생의 말을 들은 태종은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재차 명령했다.

하지만 민인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일을 아뢰는 것과 경연(經筵)에서 강론하는 것을 신 등이 만일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備記·비기]하겠습니까?"라고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태종은 웃으면서 “이곳은 내가 편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필(史筆)은 곧게 써야 하지만, 비록 보평전[殿·전]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인생이 대답했다.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臣如不直 上有皇天·신여불직 상유황천]”(태종실록 1년 4월 29일).

국왕과 사관의 기싸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앞의 죄견이 제안한 사관의 임무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국왕의 편전은 물론이고 사냥 장소까지 따라가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자세가 그것이다. 특히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라는 말에는 사관의 사명감이 드러난다.

여기서 인상적인 말은 ‘위에 하늘이 있다’는 표현이다. <세종실록>을 검색해보면 하늘[天]이란 말은 1,519개 기사가 검색된다. 자연환경으로서 하늘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주재자(主宰者)로서 하늘을 지칭할 때 쓰이고 있다. 가령 가뭄이나 홍수처럼 자연재해가 계속되면 신하들은 ‘나랏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하늘이 꾸짖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왕은 “행실을 조심해서 재변을 그치게 하고 하늘의 뜻에 응답[答天意·답천의]”할 것을 약속하곤 했다(세종실록 18년 11월 14일). 국왕이 행실을 삼갈 경우 하늘이 눈이나 비를 내려 상서로움을 보여 주었다[天有祥雪·천유상설]고 말하고 있다(세종실록 즉위년 10월 27일).

다시 말해서 민인생이 ‘위에 하늘이 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만약 제대로 쓰지 않으면 주재자인 하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점, 따라서 왕명보다 천명을 따르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정종 재위 1년에 공신 조박(趙璞) 역시 “임금이 두려워 할 것은 하늘이요, 사필입니다[人君所可畏者 天也 史筆也·인군소가와

자 천야 사필야]"라고 말했다. 조박에 따르면 '여기서 하늘이란 푸르고 높은 자연환경[蒼蒼高高·창창고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은 곧 "하늘의 이치[理]"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사관이 임금의 잘 잘못을 기록해[記人君之善惡·기인군지선악] 만세에 남기고 있는데[以貽萬世·이이 만세]" 어찌 두렵지[畏·외] 않겠느냐는 게 그의 말이었다(정종실록 1년 1월 7일).⁷⁾

민인생이 앞에서 왕의 매 사냥을 따라다니며 기록한 지 5일이 지났을 때였다. 태종은 "며칠 전 사관이 사냥하는 곳에 따라온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물었다. 왕의 물음에 대해 승지들은 '사관의 직책은 시사(時事)를 기록하는 것인데, 하물며 임금의 거동은 당연히 기록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시독관 김과(金科)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기록의 목표를 얘기했다. '임금이 구중궁궐에 있다 보면 경계하는 뜻이 날로 풀리고, 게으른 마음이 날로 생기게 되는데, 오로지 사관만이 임금을 경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늘과 사필뿐[人君惟畏皇天與史筆而已·인군유외황천여사필이이]"이라는 게 김과의 주장이었다. 정종 때 조박이 한 말을 똑같이 되풀이한 것이다.

그 이유를 묻는 왕에게 김과는 "하늘은 형상이 없으나, 착한 것에는 복을 주고, 음란한 것은 화(禍)를 주며, 사필(史筆)은 시행 중인 정사 [時政·시정]의 좋고 나쁜 것과 행동의 잘잘못을 곧게 쓰지 않음이 없는데, 만세에 전하여 효자와 자손이 능히 고치지 못하니,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태종실록 1년 3월 23일). 최견이 말한 바 장차 역사 기록을 읽을 주체와 그 기록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를 정확히

7)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관과 언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정 운영 시스템이 태종시대에 마련되었다는 연구가 나왔다(이윤복 2021). 이는 성종시대에 들어 형성되었다는 종래의 통설을 비판하는 것인데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태종시대의 사관과 언관의 언행이다. 위의 민인생의 태도와 함께 김과의 발언이 그 예다.

8) 김과는 태종이 수시로 불러 함께 책 내용을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신하'였다(태종실록 3년 3월 10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민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위에 하늘이 있다’는 민인생의 도발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사관의 편전 출입을 금지했다. 그 발언이 있은 지 10여 일 후인 1401년 5월 8일 경연(經筵)이 열렸다. 경연 장소가 편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관도 입시(入侍)했다. 경연이 끝나고 주찬(酒饌)을 베푼 자리에서 민인생이 “지금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강론(講論)하심이 매우 정밀하고 또한 온화한 말씀이 친밀하십니다”라고 말했다. 한껏 왕을 칭찬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원컨대 전하께서 비록 편전(便殿)에 앉아 정사를 들으실 때라도 사관으로 하여금 입시해 아름다운 말[嘉言·가언]을 기록하게 하소서”라고 말했다. 칭찬에 이어서 편전 입시를 요청하는 말이 다시 나오자 태종은 사관을 역임한 사람들에게 의향을 물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고려 우왕 때 사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두렵고 위축되어 감히 왕을 뵙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연 입시는 괜찮지만 편전 출입은 곤란하다는 말이었다. 그러자 민인생은 큰 소리로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은 것’ 인데[主明則臣直·주명즉신직], 어떻게 혼미했던 고려시대 사례를 가져와서 편전 출입을 금지하려 하느냐’고 말했다(태종실록 1년 5월 8일).

왕과 신하들 모두에게 대들고 큰소리를 친 민인생의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관 입시 기회가 더 줄어들었다. 두 달 뒤인 1401년 7월 8일 왕이 보평전에 들어갔는데, 민인생이 따라가서



<그림 10> 민인생이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은 것[主明則臣直]”이라고 말하는 태종실록 부분

문밖에서 엿보았다[戶外以窺·호외이규]. 그 모습을 본 태종이 화를 내며 ‘앞으로 사관은 날마다 예궐(詣闕)하지 말고 6아일(六衙日 : 1일·5일·11일·15일·21일·25일) 조회 때만 입시(入侍)하라’고 하명했다(태종실록 1년 7월 8일). 문 밖에서 휘장을 걷고 엿본[捲帳窺伺·권장규사] 민인생 역시 여러 차례 예를 어긴[屢失其禮·누실기례]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다(태종실록 1년 7월 11일).

그 후 신하들은 6아일에만 사관이 입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관의 매일 예궐’을 요청했다. 태종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사관의 매일 예궐을 허락했다. 하지만 사관의 편전 출입은 몇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태종실록 12년 7월 29일 : 12년 8월 26일). 승지들이 사관을 겸하고 있으니 기록에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사관의 무례함이 매우 싫다[甚憎·심증]는 게 그 이유였다(태종실록 12년 10월 24일). 태종의 유명한 에피소드, 즉 사냥하다가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낙마(落馬)했을 때 좌우를 돌아보며 “사관이 모르게 하라[勿令史官知之·물령사관지지]”고 지시한 사실 역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태종실록 4년 2월 8일).

3. 이황

조선성리학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퇴계 이황(李滉, 1501 ~ 1570)이 사관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이황은 1534년(중종 29년) 문과에 급제하던 해 4월에 예문관 검열에 임명되었다. 이 때 문에 이황은 자신을 “이 한림(翰林)”이라고 불러 주기를 원했다고 한다. 한림, 즉 사관이 이황의 첫 관직일 뿐만 아니라, 학자인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관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오항녕 2018b, 60쪽).

하지만 사관으로서 퇴계의 첫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1534년(중종

29년) 그의 처삼촌인 권전(權磧)이 “반역한 사람[逆人·역인]”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간원의 비판이 제기되었다(중종실록 29년 4월 20일). 중종은 처가 쪽 흡결이 있는 이황을 추천했다는 이유로 예문관 관원 전원을 파직시켰다(중종실록 29년 4월 29일). 이는 사관직은 조선 초부터 4조(祖)에 흡이 있으면 임용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후임 사관은 사관들이 의논하여 스스로 친거한다는 전통 때문이었다.

이황은 예문관에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파직되었으므로 정식 사관으로서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후 춘추관 겸임 사관으로 역할했다(오항녕 2018b, 61쪽). 겸임 사관으로서 기록해 집에 보관 하던 가장사초를 아들 이준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이 그 근거이다 ('집에 있는 을사년(인종 1년, 1545년)과 병오년(명종 1년, 1546년) 사초를 가져오라')(이황 1977, 129쪽 : 오항녕 2018b, 61쪽에서 재인용).

사관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황은 제자인 김성일과 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예를 들면 김성일이 찾아와 “사관 직책은 임금의 거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당연히 용모와 말하는 기세 사이까지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입시(入侍)하는 신하들이 모두 부복하여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 “대체적인 말과 행동의 큰 것은 기록하지만 말과 기색을 살피며 기록하는 원칙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황은 “사관이 부복해 있으면 곡절을 다 기록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대가 말한 바가 참으로 옳다”라고 호응했다. 선조의 즉위 초년에는 사관뿐만 아니라 시강하는 사람 모두에게 고개를 들고 앉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신하들이 스스로 예전처럼 부복하였다는 게 이황의 대답이었다. ‘신하들 스스로가 좋은 전통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김성일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據事直書·거사직서] 역사기록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사실에 따라 정직하게 기술하여 시시비비가 각자 돌아갈 바가 있게 한다면 공과 죄가 서로 가리어지지 않고 선과 악이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여 후세의 공론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인데, 상관(上官)으로 있는 자가 하위의 사관에게 평가[褒貶·포폄]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쭈었다.

이에 대해 이황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가운데에 평가를 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춘추>를 쓴 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관 된 사람들은 이 원칙을 지켰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선악이 어떠하며 사실이 어떠한지를 몰라 도무지 의거할 만한 실상이 없는데도 “억지로 처음 들어온 사관을 시켜 한 번 끝으로 단정하는 말을 쓰게 하여 만세(萬世)에 전하게 하는” 세태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황과 김성일의 이 대화는 명종 때 이기가 일으켰던 ‘시정기 삭제사건’ 등을 겪으면서 위축된 사관의 기운을 보여 준다. 하지만 사관이라면 눈치 보지 않고 바르게 기록해야 한다는 직필 원칙과 기록의 비밀유지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는 귀한 자료이기도 하다(오항녕 2018b, 62쪽).



<그림 11> 사관(史官) 직무에 대한 퇴계와

김성일의 문답

(* 출처 : <퇴계선생문집> 권340. 서(書))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속기 역사는 서양보다 그 출발점은 늦지만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 내용을 속기 방법에 의해 기록·보존해 온 몇 안 되는 나라이다. 실제로 국회의회록에는 1966년 제58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김두한 의원의 발언과 행동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⁹⁾ 부산 피난 시절, 장택상 부의장이 조병옥 내무부장관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한 것을 나중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담당 속기사가 “속기록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거부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또 야당 국회의원들의 장시간 필리버스터(filibuster : 무제한 토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도 속기사들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기사는 전통시대의 사관’이라고 말한다. 속기사들 스스로도 ‘역사를 기록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손정아, 2019).

우리 역사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관 정신’을 지켜온 사람들은 매우 많다. 본문에서는 고려시대 사관 최견을 비롯해, 태종 때의 민인생과 김과의 언행, 그리고 명종 때의 이황과 김성일 등의 대화를 통해 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민인생의 경우는 있는 그대로 곧게 기록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를 잘 보여 준다(‘극한 직업’으로서 사관).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이황이 ‘사관 선배’라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속기사는 조선시대 사관에 비견되기도 하고(이경재 2012, 44쪽; 홍사덕 2013, 107쪽), 국회속기록에 대해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는 중요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그 가

9) 김두한 의원은 당시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해 발언하고, 발언 말미에 “그러니 우선 너희들이 밀수한 사카린 맛을 봐라”며 국무위원석을 향해 사카린상자를 쏟아 봇고 오물을 쏟아 부었는데, 속기록을 보면 “똥이나 쳐먹어, 이 새끼들아!”(장내소란)(“신회 선포해요” 하는 이 있음).

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조순형 2013, 96쪽). ‘현대판 사초(史草)인 국회속기록은 국보(國寶)급 가치가 있다’고 일컬어지기도 한다(김수한 15대 국회의장 - KBS 2012, 82쪽).

국회 개원 60주년 특집 방송(2008. 7. 17.)에서 KBS는 이렇게 국회 회의록의 가치를 평가했다 :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이 있음으로 해서 인류문화가 존재하고, 인류는 기록의 수단으로 문자를 발명함으로써 역사를 기록했다. 따라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헌국회 이래 현재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속기록만 한 것이 없을 듯싶다. 국회속기록은 500여 년 전 사관들에 의해 기록된 사초를 가지고 쓴 왕조실록에 버금간다 할 만하다. 아니, 그보다도 더 객관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조 실록은 어전에서 논의된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역사책이지만 국회 속기록은 ‘현대판 사관’인 속기사들이 국민의 선량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가감 없이 기록한 것으로 가장 사실에 가까운 사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국회속기록은 그 어느 사료보다 정확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사초’ 바로 그것이다.”(KBS 2012, 81쪽).

어떤 사람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관보국 편집장을 “백악관의 사관(史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통령이 ‘한 번만 고쳐 달라’고 통사정해도 일단 내뱉은 말은 고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을 맞이해 베푼 국빈 만찬장에서 이집트를 이스라엘로 착각, “우리의 우방 이스라엘”로 부르는 실수를 했다. 당황한 대통령이 이튿날 국립문서보관소 관보국 편집장 마이클 설리번 씨를 만나 그 실수를 정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대통령의 청탁을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었던 설리번 씨는 ‘알겠다’고 말하곤 속기록에는 실수한 그대로 적었다(문명호 2012, 68-70쪽).

국가의 주요 인물들이 공개석상에서 행하는 발언과 성명서와 대화 등을 모두 기록한 다음,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시대와 그 형태는 다르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 틀림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 속기사들은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다”는 긍지와 역사적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만으로 양질의 회의록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속기사가 ‘전통시대의 사관’으로서 또는 ‘전통의 현대적 계승자’로서 이러한 기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노력과 외부적인 인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내부적인 노력으로는 체계적인 훈련 과정 도입, 교육 기회 제공, 변화하는 기술발전의 도입 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전문가로서 그에 걸맞은 처우와 사회적 인정 등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현재 대한민국 속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 연구에서 다룰 것을 희망한다. (끝)

참 고 문 헌

■ 1차 자료

<태종실록> <세종실록> <한서(漢書)> <퇴계전서>
<한국 속기 50년사>(대한속기협회)

■ 2차 자료

1. 단행본

- 김정하. 2013. <남유럽의 전통기록물 관리>. 이담.
- 김혁. 2002. “조선후기 중앙관청 기록물에서 등록의 위상”. <계간 서지학보> 26집.
- 덩사오싱 외. 2003. <당안관리학 개론: 중국의 현대기록 관리학>. 혜안.
- 박현모. 2017. <세종시대 국가경영 문헌의 체계화 사업백서>. 한국형리더십개발원.
- 박현모. 2019. <세종학개론>. 문우사.
- 배현숙. 2002. <조선실록 연구 서설>. 태일사.
- 오항녕. 2009.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 오항녕. 2018a. <실록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 오항녕. 2018b. <후대가 판단케 하라: 조선실록의 수정과 개수>. 역사비평사.
- 유순태 외. 1998. <한국 속기 50년사>. 대한속기협회.

- 의사국 의정기록과. 2017. <국회회의록 작성편람>. 국회사무처 의사국.
- 이건희. 1993. <신 경영선언>. 삼성신경영실천위원회.
- 이황. 1977. <퇴계집> 1~2. 민족문화추진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역사비평사.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조은글터.

2. 학위논문

- 김유석. 1993. <네오코그니트론을 이용한 速記文字 인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 김진우. 1993. <퍼지推論을 이용한 일파식(一波式) 速記文字의 온라인 인식에 관한 연구>.
- 문선희. 2019. <국회회의록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아. 2019. “속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국회 속기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양윤영. 2010. <청각장애대학생의 수화통역과 속기 지원 실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유시은. 2018.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대근. 2011. <국회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라. 2018. <국회 비공개회의록 공개 개선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복. 2021. <조선 태종대 대간 언론의 역할 : 민생 관련 사안을

- 중심으로>.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기희. 2018. <영국 의회 회의록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연구논문

- 가상준·조진만·최준영·손병권. 2008.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특징.”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1호, 47-68.
- 고인환·안정배·강신재. 2018.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분석: 17-18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13권 제2호, 5-28.
- 곽진오. 2011. “한일회담 단절을 통해서본 한국의 독도등대설치와 일본: 일본의회 독도관련 속기록을 중심으로, 1956~54”. <일어일 문학연구> Vol.76 No.2. 한국일어일문학회.
- 김란희. 2002. “속기실무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 방안”. <속기연구논문집>. 대한속기협회.
- 김선옥. 1998. “국회회의록 변천에 관한 고찰”. <속기관련 자료·논문 집>. 대한속기협회.
-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방안 연구”, <기록학 연구>. 35호. 93-132.
- 김장환. 2018.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 연구>. 55 호. 39-71.
- 김재학. 1998. “정보화시대 회의록발간 체계의 재설정: 국회회의록 발간체계의 변화를 위한 모색”. <속기관련 자료·논문집>. 대한속 기협회.
- 김창진. 2001. “국회상설 소위원회 운영에 대비한 회의록 신속제고 방안”. <속기연구 연구논문집>. 대한속기협회.
- 김혁. 2002. “조선후기 중앙관청 기록물에서 등록의 위상”. <계간 서 지학보> 26집.

- 대한속기협회 연구위원회. 1998. “각국 의회의 회의록 발간현황”. <속기관련 자료·논문집>. 대한속기협회.
- 박정호. 1997. “현행 속기업무의 개선을 위한 주임속기사 제도 도입 방안”. <속기관련 연구논총>. 대한속기협회.
- 손숙자 외. 1997. “빠른손워드 속기 약자 체계화”. <속기관련 연구논총>. 대한속기협회.
- 손재옥. 1997. “정보화사회와 국회회의록의 활용방안”. <속기관련 연구논총>. 대한속기협회.
- 양선모. 2012. “천 냥 주머니와 무죄증명.”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선집>. 대한속기협회.
- 윤대근·남태우. 2011. “국회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1(2). 143-163.
- 이경식. 1997.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국회회의록의 상관관계: 국회회의록 전문지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속기관련 연구논총>. 대한속기협회.
- 이경식. 2001. “속기업무 전문화에 대한 소고: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속기연구 연구논문집>. 대한속기협회.
- 이경식. 2011. “속기, 우리 정치사의 사초(史草).” <국회보> 2집. 94-95쪽.
- 이경재. 2012. “국회 속기사와 출입기자.”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선집>. 대한속기협회.
- 이승철. 1997. “회의록원고 작성방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속기관련 연구논총>. 대한속기협회.
- 이원영. 2005.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정보관리 학회지>. 22(1). 5-20.
- 이주성 외. 1997. “CAS 속기에 관한 검토: 약어를 중심으로”. <속기 관련 연구논총>. 대한속기협회.
- 이주성. 2001. “국회회의록의 변천과 발전방향”. <속기연구 연구논문집>. 대한속기협회.

- 이현출·장재호·김경태. 2020. “국회회의록 토픽분석을 통한 상임위원회 갈등구조 분석: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9(2): 131-167.
- 임경석. 2021. “코민테른 조선위원회 속기록 연구: 1928년 9월 20일 자 회의를 중심으로”. <사림> 76호. 수선사학회. 289-315쪽.
- 채강희. 1997. “요약회의록 발간방안: 상임위 및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속기관련 연구논총>. 대한속기협회.
- 淩水信昭(천수신소). 1998. “회의록 작성의 현황과 가까운 미래: 중의원기록부의 경우”. <속기관련 자료·논문집>. 대한속기협회.
- 최예숙. 2001. “회의록 작성업무 전산화에 따른 합리적 직무배분”. <속기연구 연구논문집>. 대한속기협회.
- 최장근. 2012.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영토 확립의 억측 주장 : 대일평화조약 직후의 일본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No.53. 한국일본문화학회.
- 한우근. 1988.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66.
- 홍기표. 1998. “속기업무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속기관련 자료·논문집>. 대한속기협회.
- 홍기표. 2002. “회의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수문의 방법론적 고찰”. <속기연구논문집>. 대한속기협회.
- 홍사덕. 2013. “회의록은 영구 보존되는 중요한 사초”.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선집 II>. 대한속기협회.
- 홍순관. 1997. “현직 수필속기사의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 방안 연구: 국회수필속기사의 재교육을 중심으로”. <속기관련 연구논총>. 대한속기협회.
- KBS. 2012. “국회 속기록은 국보다: 국회개원 60주년 특집.” KBS 2008년 제헌절 특집방송(2008.7.17.).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선집 II>. 대한속기협회.
- W.J. Stewart. 1998. “미국 상원에서 공식회의록을 발간하기까지”.

<속기관련 자료·논문집>. 대한속기협회.

4. 조사 보고서

- 김창진 외. 1999. <PRS of INTERSTENO & NCRA 100주년기념회의 참석 및 일본속기협회방문 보고서>. 대한속기협회.
-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2012.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선집>. 대한속기협회.
-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2013.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선집 II>. 대한속기협회.
- 박현모·이현출·송재혁. 2021. <국회회의록의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
- 손숙자 외. 2000. <일본·호주의회 시찰 보고서>. 대한속기협회.
- 유순태 외. 1999. <국회회의록의 어휘빈도수 조사연구-명사편>. 대한속기협회.
- 유순태 외. 2001. <국회회의록의 어휘빈도수 조사연구>. 대한속기협회.

5. 웹사이트

- 공공인공지능 오픈 API·DATA 서비스 포털 (<https://aiopen.etri.re.kr/>)
- 과학기술지식인프라 (<https://scienceon.kisti.re.kr/main/mainForm.do>)
- 대한민국 국회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
- 미국 The Federal Digital System (<https://www.govinfo.gov/>)
- 미국연방의회회의록
 (<https://www.congress.gov/117/orec/2021/01/11/CRBC-2021-01-11.pdf>)
- 영국 UK Parliament Hansard (<https://hansard.parliament.uk/>)
- 일본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캣벌 (<https://catbell.org/bill/feed>)
- 현정회 홈페이지 (<http://www.rokps.or.kr/>)

- 호주 Parliament of Australia (<http://aph.gov.au/>)

부록 : ‘기록 정신’ 관련 일차자료 선별

1. 역사기록 왜 하나? – 사마천, ‘태사공 자서’

나 태사공 사마천은 말한다.

선친께서는 “주공이 세상을 뜨고 500년 만에 공자가 태어나셨다. 그리고 공자가 세상을 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시 500년이 지났다. 이제 누가 성인의 사업을 이어받아 『역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춘추』를 읽고, 『시』·『서』·『예』·『악』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라고 하셨다. 바로 지금이란 뜻이구나! 바로 지금이란 뜻이구나! 그러니 내 어찌 감히 이 일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상대부 호수(壺遂)가 “이전에 공자께서는 왜 『춘추』를 지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나 태사공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듣기에 동중서(董仲舒) 선생께서 “주나라의 왕도가 쇠퇴하자 공자는 노나라의 사구가 되었다. 그러자 제후들은 공자를 시기하고 대부들은 공자를 방해하고 나섰다. 이에 공자는 자신의 말과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242년에 이르는 여러 나라의 역사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천하의 본보기로 삼았다. 천자라도 어질지 못하면 비판하고, 무도한 제후는 깎아내리고, 간악한 대부는 성토함으로써 왕도의 이상을 나타내려 했을 따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자께서도 “내가 본래 추상적인 이론으로 기록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분명하고 절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춘추』는 위로는 삼왕의 도를 밝히고, 아래로는 인간사의 기강을 가리고, 의심스러운 바를 구별하고, 시비를 밝히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결정하게 하고, 선은 장려하고 악은 미워하게 하며, 유능한 사람은 존중하고 못난 자는 물리치게 하고, 망한 나라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며, 끊어진 세대의 후손을 찾아 잊게 하며, 모자란 곳은 메워 주고 못 쓰게 된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 이것이야말로 큰 왕도입니다.

[…]

『춘추』는 옳고 그른 것을 가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사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예』는 사람의 행동을 절제시키고, 『악』은 평화로운 마음을 이끌어내며, 『서』는 정치를 말하고, 『시』는 감정을 표현하며, 『역』은 변화를 말하고, 『춘추』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수습하고 바로 돌려놓는 데는 『춘추』만 한 것이 없습니다.

『춘추』는 글자로 수만 자나 되지만 거기에 나타나 있는 대의도 수천 가지나 됩니다. 만사의 성공과 실패, 흥망과 성쇠가 모두 『춘추』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춘추』에는 시해당한 군주가 36명에 멸망한 나라가 52개나 되며, 사직을 보존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를 떠돈 제후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까닭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스림의 근본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에서는 “터럭만큼의 실수가 천 리나 되는 엄청난 잘못을 초래한다.”고 했고, 또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아들이 아비를 살해하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결과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면 『춘추』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춘추』를 모으면 바로 코앞에 나쁜 말만 일삼는 소인배가 있어도 못 보고, 등 뒤에 음흉한 간신이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신하된 자도 『춘추』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춘추』를 모으면 평범한 사무인데도 전례에 집착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긴급한 일을 당해도 상황에 맞추어 대처할 줄 모릅니다. 군주나 아비가 되어 『춘추』의 큰 뜻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면 최악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신하나 자식된 자로서 『춘추』의 큰 뜻을 통찰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찬탈이나 군주 시해와 같은 죽을 죄에 빠집니다.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겠지만 큰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의 질책을 받아도 감히 반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의의 요지를 잘 모르면 군주는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

하며, 아비는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게 됩니다.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신하에게 놓락당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죽음을 면키 어렵습니다.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면 무도한 아비가 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불효자식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천하의 큰 잘못입니다. ‘천하의 큰 잘못’이라는 죄명을 갖다 붙여도 감히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춘추』는 예의의 커다란 근본입니다. 예의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고, 법이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적용 효과는 쉽게 보이는 반면 예의 예방 효력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太史公曰：「先人有言：『自周公卒五百歲而有孔子，孔子卒後至於今五百歲，有能紹明世，正易傳，繼春秋，本詩書禮樂之際？』意在斯乎！意在斯乎！小子何敢讓焉。」上大夫壺遂 曰：「昔孔子何為而作春秋哉？」太史公曰：「餘聞董生曰：『周道衰廢，孔子為魯司寇，諸侯害之，大夫壅之。孔子知言之不用，道之不行也，是非二百四十二年之中，以為天下儀表，貶天子，退諸侯，討大夫，以達王事而已矣。』子曰：『我欲載之空言，不如見之於行事之深切著明也。』夫春秋，上明三王之道，下辨人事之紀，別嫌疑，明是非，定猶予，善善惡惡，賢賢賤不肖，存亡國，繼絕世，補敝起廢，王道之大者也。」]

[…]
春秋辯是非，故長於治人。是故禮以節人，樂以發和，書以道事，詩以達意，易以道化，春秋以道義，撥亂世反之正，莫近於春秋。春秋文成數萬，其指數千，萬物之散聚皆在春秋。春秋之中，弑君三十六，亡國五十二，諸侯奔走不得保其社稷者不可勝數。察其所以，皆失其本已。故易曰『失之豪釐，差以千里』。故曰『臣弑君，子弑父，非一旦一夕之故也，其漸久矣』。故有國者不可以不知春秋，前有讒而弗見，後有賊而不知。為人臣者不可以不知春秋，守經事而不知其宜，遭變事而不知其權。為人君父而不通於春秋之義者，必蒙首惡之名。為人臣子而不通於春秋之義者，必陷篡弑之誅，死罪之名。其實皆以為善，為之不知其義，被之空言而不敢辭。夫不通禮義之旨，至於君不君，臣不臣，父不父，子不子，夫君不君則犯，臣不臣則誅，父不父

則無道，子不子則不孝。此四行者，天下之大過也。以天下之大過予之，則受而弗敢辭。故春秋者，禮義之大宗也。夫禮禁未然之前，法施已然之後；法之所為用者易見，而禮之所為禁者難知。]

— 사마천. 2013. <사기열전>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 김영수 번역. 2013.

史記卷一百三十							
漢	太	史	令司馬遷	撰			
宋中郎外兵曹參軍裴駟集解	唐國子博士弘文館學士司馬貞索隱	唐諸王侍讀率府長史張守節正義					
太史公自序第七十							
昔在顓頊命南正重以司天北正黎以司地							
正職臣火水配也水爲陰故命南正重司天地之官然司天火正黎兼地							
照四海又幽通賦云黎淳曜於高辛則火正爲是敦大光							
唐虞之際紹重黎之後使復典之至于夏商故重黎氏							

<그림 12> 사마천, ‘태사공 자서’

(* 출처 : 네이버 이미지)

2. 세종시대 실록편찬 원칙 _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지관사(知館事) 유관(柳觀)과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희(尹淮)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개수(改修)하게 하였다.

처음에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摶) 등이 전조(前朝 : 고려)의 역사를 편수함에 있어, 이색(李穡).이인복(李仁復)이 저술한 《금경록(金鏡錄)》을 근거로 하여 37권을 편찬하였다. 그때 정도전이 말했다. “원왕(元王) 이하는 비기어 참람하게 쓴 것이 많다”고 하였으니, 즉 “종(宗)이라고 일컬은 것을 왕이라 쓰고, 절일(節日)이라고 호칭한 것을 생일(生日)이라 썼으며, 짐(朕)은 나[予]로 쓰고, 조(詔)를 교(敎)라 썼으니, 고친 것이 많아서 그 실상이 인멸된 것이 있고, 또 운경(云敬)은 도전의 부친으로, 별다른 재능과 덕행도 없었는데도 전(傳)을 지어 드러내고, 정몽주(鄭夢周).김진양(金震陽)은 충신(忠臣)인 것을 가차 없이 깎고 몰았으며, 오직 자기의 일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정한 것이 〈그네들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서 나왔고, 착하다고 한 것과 악하다고 한 것이 옛 역사를 그르쳐 놓았다.”

진산군(晉山君) 하윤(河峯)이 말했다. “도전의 마음씨의 바르지 못함이 이와 같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 조정에 건의하였다. “옛날 역사에 상고하여 거기에 붙여 쓸 것은 더 써 넣고, 없앨 것은 삭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만 이것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했다.

무술년에 임금이 유관과 변계량에게 명하여 교정(校正)을 가하도록 했다. 유관이 주자(朱子) 강목(綱目)을 모방하여 편집하려고 하자, 변계량이 말했다. “《여사(麗史: 고려사)》가 이미 이인복과 이색과 정도전의 손을 거쳤으니 경솔히 고칠 수는 없다.” 하고는 그 편수함에 미쳐서는 옛 그것을 답습하여, 태자(太子)의 태부(太傅).소부(少傅).첨사(僉事)를 세자(世子)의 태부·소부·첨사로 하고, 태자비(太子妃)를 세자빈(世子嬪)으로 하며, 제칙

(制則)을 교로 하며, 사(赦)를 유(宥)로 하고, 주(奏)를 계(啓)로 하였고, 아직 지주(知奏)는 고치지 않았으나, 자못 당시의 사실을 잊었던 것이다.

사관(史官) 이선제(李先齊)·양봉래(梁鳳來)·정사(鄭賜)·강신(康愼)·배인(裴寅)·김장(金張) 등이 계량에게 고했다. “태자 태부(太子太傅) 등의 칭호는 당시의 관제(官制)이요, 제(制)·칙(勅)·조(詔)·사(赦)도 당시에 호칭하던 바요, 비록 명분(名分)을 바로잡는다고는 말하지만, 《춘추(春秋)》에 교제(郊禘)와 대우(大雩)를 같이 전하여 〈그 후세의〉 감계(鑑戒)가 되게 하였으니, 어찌 이를 고쳐서 그 실상을 인멸되게 하겠소.”

하지만 변계량이 ‘그렇지 않다’ 하여, 도리어 이 뜻으로써 윤회에게 고하여 임금에게 주달[轉達]하였다.

임금이 말하셨다. “공자(孔子)의 《춘추(春秋)》 같은 것은 제왕의 권한을 의탁하여 한 왕의 법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오(吳)나라와 초(楚)나라가 참람하게 왕(王)으로 일컬은 것은 깎아내려서 자(子)라고 썼고, 성풍(成風)의 장사에 천자로서 과람한 부의를 했다 하여, 왕이라 이르고 천왕이라 일컫지 않았다. 이와 같이 취할 것은 취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며, 빼앗고 주는 것이 성인의 심중의 재량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도 좌씨(左氏)가 전(傳)을 처음에 이르러서는, 형(荊)나라와 오(吳)나라와 어월(於越)나라를 한결같이 자기들이 호칭대로 족아, 왕이라 쓰고 일찍이 고치지 않았다. 《주자강목》 같은 것도 비록 춘추의 필법[書法]을 본받았다 하나, 그 주에는 참람하게 반역한 나라가 명칭을 도절(盜竊)한 것도 또한 그 사실에 인하여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는 그 기사(記事)의 규례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리라.

“오늘 사필(史筆)을 잡는 자가 이에 성인이 취하고 버리신 본지를 엿보지 못할 바엔 다만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면, 찬미하고

비난할 것이 스스로 나타나서 족히 후세에 전하고 신빙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전대(前代)의 임금을 위하여 그 과실을 엄폐하려고 경솔히 후일에 와서 고쳐서 그 사실을 인멸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종을 고쳐서 왕으로 일컬을 것도 사실에 좋아 기록할 것이며, 묘호(廟號)·시호(諡號)도 그 사실을 인멸하지 말고, 범례(凡例)에 고친 것도 이에 준하여야 하라.”

[今之秉筆者，既不能窺聖人筆削之旨，則但當據事直書，褒貶自見，足以傳信於後。不必爲前代之君欲掩其失，輕有追改，以沒其實也。其改宗稱王，可從實錄，廟號諡號，不沒其實，凡例所改，以此爲準]

변계량이 대궐에 나아가서 아뢰었다. “정도전이 참람히 비의(比擬)한 것을 고쳤사오나, 정도전 때에 와서 비로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과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이 종으로 일컬은 것을 왕으로 썼고, 또 주자(朱子)가 강목을 지을 때에, 측천황후(則天皇后)의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서 당(唐) 2년, 3년으로 썼기에, 신도 또한 위로 주자의 필법을 본받고, 아래로 도전의 뜻을 본받아, 무릇 참람하게 비의한 일은, 〈전예〉 고치지 않은 것도 또한 있는 데 따라 고쳤습니다. 또 이미 고친 바 있는 참람된 일을 다시 쓴다면, 지금 사관들이 반드시 〈이



<그림 13> 세종실록

를〉 또 본받아 쓸 것이니, 그 사실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임금이 말하셨다. “경의 말에는 내 능히 의혹을 풀지 못하겠다. 주자의 강목은 이 책과는 다르다. 주자 강목은 명분을 바로잡고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만대의 아래에서도 일성(日星)과 같이 환히 밝은 것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대강(大綱)과 세목(細目)의 구분이 없는데, 그대로 쓰지 않는다면 후세에 무엇으로 연유하여 그 사실을 보고 알겠는가.” 경이 또 말하기를, “익재가 처음에 시작한 일이라고 하는데 내 비록 굳이 옳고 그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다만 옛사람이 이르기를, ‘앞사람의 과실을 뒷사람이 쉽게 안다’고 하였거니와, 경이 말한 것같이 지금의 사관이 그것을 보고서 쓸 것이라는 것은, 즉 사실 그대로 쓴다는 말이니, 사실을 사관이 그대로 쓴다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古人云 : 前人之失, 後人易知. 卿所謂今之史官見而書之, 直書其事之語, 史官書之何害?]

하고, 드디어 유관과 윤회에게 명하여, 도전이 고친 것까지도 아울러 모두 구문(舊文)을 따르도록 하였다. […]

- 세종실록 5년 12월 29일

3. 사관 천거기준 - 고전 능통, 글짓기 탁월, 집안에 흄 없는 최고 인재

이조(吏曹)에서 사관(史官)을 천거하는 기준을 올렸다.

이보다 앞서 박은(朴尗)이 아뢰었다. “기재(記載)하는 사필(史筆)의 책임이 큰데, 지금 사관이 서로 천거하여[史官自相薦進] 사관이 된 자가 혹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에 따라서 젖비린내 나고 서법(書法)도 알지 못하는 자를 천거하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원컨대, 이 폐단을 고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사관이 (사관을) 천거하는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새로 나온 유생(儒生)의 재행(才行)과 조계(祖系)를, 위에 있는 사람이 두루 알 수 없으므로, 스스로 그 동료를 택하게 하면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정확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물며 그 천거하는 표(表)에 말하기를, ‘문(文)이나 행실에 있어 이 책임을 감당할 만하다.’고 한 경우이겠는가? 만일 혹시라도 불가하다면 고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이때에 이르러 이조에서 상언하였다. “사관(史官)은 시사(時事)를 기록하는 것을 맡아서 후세의 귀감(龜鑑)이 되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史官掌記時事, 為後世龜鑑, 其任匪輕]. 다만 참외(參外) 사관의 천거로써 계문하여 제수하니, 전선(銓選)의 법에 실로 미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사관의 곁원이 있으면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의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시직(時職)·산직(散職)의 문관(文官)으로 참외(參外)내에서 직품이 상당한 자를 모아 시험하여 반드시 경사(經史)에 통하고 제술에 능하고 안팎이 흔구(痕咎)가 없는 자로서 1망(望)에 3인(三人)을 추천하여 이조(吏曹)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계문(啓聞)하여 제수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必取通經史、工製述，內外無痕咎者一望三人，移關吏曹，啓聞除授，以爲恒式]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17년 12월 4일

4. 사관이 근무하는 곳 - 예문관(藝文館)

- 신라에서는 '한림(翰林)'이라 하였다. [...]
- (조선) 태조는 그대로 예문춘추관을 두었다가 뒤에 나누어서 예문관을 설치하고 사명(辭命 : 주로 외교 문서 및 기타 교문) 짓는 것을 관장하게 하고, 직제를 고쳐 정하였다. 영사(領事) 한 사람, 영의정이 으레 겸하였고, 대제학·제학·직제학·도승지도 으레 겸하였다. 응교 홍문관 직제학에서 교리까지 그중에서 가려서 겸하였다. 각 한 사람, 봉교(奉教) 두 사람, 대교(待教) 두 사람, 검열(檢閱) 네 사람이었다. 봉교 이하를 '한림'이라 하고 지제교는 3품에서 6품까지의 관원이 겸대하였다.
- 옛 준례에 한림을 새로 추천할 때에는 전번 추천에 제일 끝으로 추천되어서 하번(下番)이 된 자가 여러 동료와 함께 모두 모여서 새로 추천 할 사람을 서로 의논하는데, 회의는 하번이 실상 주관하는 것이었다. 문을 닫고 비밀히 의논하여 추천할 사람의 차례를 정하며 추천할 사람이 완정(完定)되면, 그 추천 문서를 일찍이 한림을 지낸 사람과 양관(兩館 : 홍문관·예문관) 당상에게 돌려서 이의가 없는 뒤에 향을 피우고 황천 후토(皇天后土)에게 고했다. 그 축문에, "사필(史筆)을 잡는 임무는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하니 추천된 사람이 그 적임이 아니면 반드시 앙화(殃禍)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3정승과 의정부의 동벽(좌찬성·우찬성), 서벽(좌우참찬관)과 양당상관·이조 당상이 합석하여서 추천에 참여된 사람에게 《강목(綱目)》·《좌전(左傳)》·《송감(宋鑑)》 등의 글을 강하게 하여, 그 성적의 높고 낮음을 매겼다.
- 사국(史局)은 나라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고, 사관(史官)을 새로 추천하는 것은 또 사국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다. 천만세(千萬世)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리가 사관의 손에 달렸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명신(名臣)과 석보(碩輔)로서 이 관직에 있던 자도 새로 추천하는, 이 한

가지 일에는 반드시 삼가고 조심하여 가려 뽑았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김일손(金駟孫)이 하번(下番)으로 5년이나 있으면서 반드시 정여창(鄭汝昌)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새로 추천하는 일을 거행했던 것이다. […]

○ 국가에서 예문관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기거주(起居注 : 임금의 좌우에 시종하면서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는 것)만 관장하게 한 것이었는데, 근래에는 사관(史官)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 경대부(卿大夫)의 죽음을 적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 행적을 단정하는 것이므로 관계가 매우 중한데, 이황(李滉)의 죽음 역시 적지 않았다. 봄가을에 전최(殿最 : 수령의 성적 매김)를 정할 때에 춘추관 당상관이 나와서 문적을 열람하니 다만 날씨의 흐림과 갭만을 적었을 뿐이고, 한 가지 일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으니 후세에서 무엇에 의거하여 사기를 만들 것인가. 《태천잡기(苔泉雜記)》

○ 사관(史官)은 반드시 추천으로써 임명하는데, 이를 ‘비밀추천[祕薦]’이라 하고 향을 피우고 하늘에 맹서하는 것은 그 일을 엄중하게 함이었다. 임진년 난리 때에 사관을 갖추지 못하였다. 기자헌(奇自獻)이 한림으로서 행재(行在 : 임금이 임시로 머무는 곳)에 있으면서 다만 한 사람을 추천하였으나, 그 사람의 명망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맹서하는 축문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끓어앉아서 말로써 하늘에 고하기를, “난리로 인하여 사람이 모자라 부득이하여 천망(薦望)만 갖추었습니다.” 하니, 듣는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 《지봉유설》

○ 우리나라의 제도에 나이 젊은 신진을 한림으로 삼아 사관의 직무를 맡긴 것은 잘못이 아닐까 하고 일찍이 의심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벼슬이 높은 사람은 너무 세상 일에 저절로 익숙하게 되어 사정(私情)에 따르는 폐단이 많이 있으므로, 나이 젊고 의기가 날카로운 자로서 그 마음을 공평하게 가진 사람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조정에서 제도를 마련한 뜻이 어찌 우연하였겠는가. 이제 《인조실록(仁祖實錄)》을 편수(編

修)하는데 사관의 기록이 극히 비루하고 졸렬하므로 조목마다 고쳐 짓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파가 갈린 뒤로는 좋아함과 미워함이 더욱 공변되지 못하므로, 모두 믿을 수 없다.

- 이긍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7권 ‘관직전고’.



<그림 14> 연려실기술

5. 실록 편찬의 기본자료 _ 가장사초(家藏史草)



<그림 15> 정태제(鄭泰齊) 가장사초

[정태제 사초]

二十六日庚申

晴，清虜崇德二年，自今年正月出城之後，用其僞號，只於祭享祝文，用中朝年號。

尹昉.金壘昌 論罪 金慶徵의 罪를 論함 諸宮家魚鹽 및 海水立案의 革罷를
請함 鄭亨道 拿治를 請함 沈謂의 假王臣之罪를 論함 蔡裕後.金世濂.梁曼容.金宗一.洪柱一等의 治罪를 論함

上 在昌慶宮 ○王世子 在瀋陽, ○停常參經筵, ○司憲府 大司憲 李榮 持平
南老星，司諫院 正言 鄭之虎之爲人庸鄙，媚悅一銓郎，得通顯路，時議唾之。

合啓曰，大凡賞罰明而後，人心服人心服而後，紀綱立故，古之明王，行賞先於疏遠，用罰始於貴近爲國之道，不過信賞必罰而已，今殿下則不然，賜馬之賞，先及於僨事之金壘，可謂賞先於疏遠乎，尹昉金壘，俱是亡國大臣，而壘則誤國之罪重於昉，昉則加以失節之罪而或止於削奪，或止於罷職，旋卽收敍，可謂罰始於

<1권01_0003>

貴近乎，昉壘之罪，請陳其梗概，壘則多劫無謀，猜復自用，罔念舉義之意，唯以瀆貨爲事，甲子之變謂逆适不叛，及其動兵也，欲嚴其獄，以解上意，不問是非，一夜之間，亂斫三十餘人，欺罔君父之德，權兼將相，越視秦朴(竹/魯)之行，不卽發送，自上特下敵若深入不察，難免重責之教，自此附會和議及夫駐駕南漢之夜，唯勸上潛出，而已北門之戰，多喪精銳，歸罪於幕下所帶軍官，或使之守其家舍，或使之護其駄載，爲其一家避亂

清이侍女婚媾.甲山採蓼人.被擄走回人事旨詰責 尹昉金壘圍籬安置 倭가 여려 藥을 청함

晴，上在昌德宮，○停常參經筵，○謝恩使申景禎等馳啓曰，龍馬兩將，以侍女婚媾向化漢人，猪酒供饋甲山採蓼人，被擄走回人等事，重複詰責，多般恐嚇，令廟堂急速指揮，備邊司回啓曰，侍女婚媾走回人等事，柳琳之去，問答說話，啓下書給，而漢人猪酒，其時守令，曾已拿來科罪，甲山採蓼人，鉤問同黨，而他無可疑者，侍女亦已抄擇，而當此潦節，勢難作行八月間入送之意言及事，移文何如，傳曰，彼人欲見回報文書，則柳琳口必不樂聞所言之事，明白移文，俾無詰責之弊，侍女八月入送事依啓，○削金壘官爵黜于門外，○兩司大司憲李顯英，大司諫全湜，持平金泰基 원주合啓，尹昉圍籬安置，金自點，依律

<2권01_0241>

定罪，上答曰勿煩，○憲府連啓，還收申景瑗放釋之命 不允，○東萊府使馳啓曰，特送正官倭等言，紀伊大納言送人來請於島主曰，雖有藥料，日本之醫，

未能詳知，治病不利，朝鮮必有良醫，問諸藥性，且若干材，書諸別幅以送，願得實與根，所謂大納言，卽關伯同姓三寸叔也，遠臂島主要求諸藥，此人之請，不可不另施，令該曹稟處，所呈別幅送上，別幅曰，望請藥草根竝核實事，夫物產不常，或古有而今無者，或古無而今有者，或今古皆有而中世無者，或土地宜與不宜者，或四方風氣異而有無者，中華既然，日本亦同，良醫之用藥，猶離婁之督繩，魯般之削墨，師曠之用六律，如何可廢哉，只恐杜衡亂細辛，蛇床亂蘿蕪，似而非者

* 鄭泰齊의 『史草』 上.下와 奎章閣 所藏의 『仁祖戊寅史草』(No. 古 4254-36)를底本으로하여연대순으로편집한것임.¹⁰⁾

[해제] 일반적으로 사초(史草)란 사관(史官)이 국정 전반에 대하여 매일 기록한 초본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사초와 시정기(時政記)가 있다. 사초는 가장사초(家藏史草)를 말하는데, 사관들이 인사와 관련된 인물의 포폄(褒貶) 등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시정기는 춘추관 소속 사관이 그날 그날 시정득실(時政得失)과 관리들의 능력 유무 및 잘잘못을 기록한 것이다.

엄격히 말한다면 사초와 시정기는 약간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초가 인물에 대한 평가나 국가기밀을 기록한 반면, 시정기는 다만 매일의 시정득실에 대한 논의와 의례 등을 적을 뿐이다. 둘 다 서로 보완되게 실록편찬에 활용되었다.

인조 때 예문관 검열(檢閱) 겸 춘추관 기사관(記事官)으로 사관(史官)직을 수행했던 정태제(鄭泰齊, 1612~1669)가 약 9개월간 남긴 사초, 현재 정태제의 다른 전적 38점과 함께 정태제묘 출토 전적류 일괄이란 명칭으로 서울시 시도유형문화재 제357호로 지정되어 있다. 1987년 3월에 동래 정씨 사암공파 종친회에서 경기도 여주 능마리에 있는 선영의 이상작업

10) 출처 : <朝鮮時代史草 I>

을 하던 중 사암 정대년의 고손인 정태제(鄭泰齊)의 묘를 파헤치자 시신이 300년 넘게 부패되지도 않은 채 미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관 속에는 그의 시신뿐만 아니라 함께 관 속에 묻었던 사초도 썩지 않고 발견되었다.

발견된 사초는 국당(菊堂) 정태제가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으로 일할 당시 인조 15년에서 16년에 걸쳐 작성한 시정기였는데, 단순한 정무 기록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사평(史評)이 곁들여져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더욱 컸다. 그가 작성한 『사초』의 형태는 상·하 2책 필사본으로 四周雙邊, 半郭, 有界, 註雙行, 上內向花紋魚尾를 갖춘 28.5×19.5cm의 규격을 지니고 있으며, 상권은 217면 하권은 235면이다.

상권의 내용은 인조 15년(1637, 丁丑) 12월 26일 경신(庚申)부터 무인(戊寅)(1638) 5월 22일 甲申까지, 하권은 인조 16년 무인(戊寅) 6월 13일부터 무인(戊寅) 9월 17일까지의 조정시사와 인물·사건에 대한 기사이다.

당시 정태제는 춘추관 기사관으로서 조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정의 득실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의 사관에 의한 사평(史評)을 곁들였다. 특히 이 『사초』에 나오는 기사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 당시 黨色에 따른 史書編纂의 筆削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상·하 2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권은 인조 15년인 1637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5월 22일까지이고, 하권은 인조 16년인 1638년 6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다. 그가 필사본으로 작성한 『사초』 상권은 217면, 하권은 235면이다.¹¹⁾

11) 자료 : <조선시대사초 I>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정리함

6. 실록 편찬의 기본자료 _ 시정기(時政記)

춘추관에서 교지(教旨)를 받고 기사(記事)를 넓힐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었다.[擬議廣記事之條以啓]

“1. 《원육전》의 한 조목을 삼가 상고하건대, ‘서울과 지방[京外]의 대소 관청[衙門]에서는 무릇 시행하는 일이 권계(勸戒)가 될 만한 것은 명백하게 써서 본관에 보내어 기사(記事)에 빙거(憑據)가 되게 하되,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는다[可爲勸戒者, 明白開寫, 送于本館, 以憑記事, 永爲恒式].’ 하였습니다. 뒤로 사헌부·의금부는 다만 죄명의 계본(啓本)만을, 예조도 또한 변괴·효순 등의 일만을 드문드문 실어 보낼 뿐이고, 그 나머지 각사(各司)는 모두 거행하고 있지 않사오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부터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1. 여섯 승지(承旨)와 좌우사간(左右司諫), 의정부 사인·서연관(書筵官) 두 사람과 여덟 한림(翰林) 등이 비록 이미 시사(時事)의 기록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는 인물을 진퇴시키고, 병조는 군기를 맡고, 예조는 예악을 맡고, 경연은 유악(帷幄)에 가까이 모시고, 사헌부는 백관을 규찰하고, 승문원은 사대(事大)를 오로지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집의(執義) 이하와 낭청(郎廳) 중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관(史官)을 겸임하게 하고, 경연관은 서연의 예에 의하여 두 사람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여 기사(記事)를 넓히소서. [宜令執義以下及郎廳中一人兼帶史官, 經筵官, 依書筵例, 使二員兼帶, 以廣記事]

1. 예문관(藝文館)과 춘추관(春秋館)은 본래 일체(一體)이고, 또 예문관 직제학과 직관(直館) 두 관원은 별로 직사(職事)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청렴하고 정직하고 문학이 있는 자를 뽑아서 법식에 따라 사관(史官)을 겸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본관(本館)에 앉아서 모든 대소 아문에서 보고하는 문서를 항상 점검(點檢)을 가하여 연월의 순서대로 편찬해

서 곧 찬록(撰錄)하며, 국가의 예악(禮樂)·형정(刑政)·제도(制度)·문물(文物), 현재 행하는 사무로서 대체에 관계되는 것을 모두 써서 유실됨이 없게 하고, 송나라 조정의 고사에 의하여 시정기(時政記)라고 이름하여, 뒷날에 역사를 수찬할 때에 소용이 되게 하소서. [依宋朝故事, 名之曰 時政記, 以爲後日修史之用]

1. 대간의 상소와 신하들이 상서하여 일을 아뢴 것을 기사관(記事官)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바치게 하여 기재(記載)에 대비하소서.

1. 당상관 한 사람이 매월 한 차례씩 본관에 앉아서 시정기(時政記) 수찬(修撰)의 근만(勤慢)을 엄하게 검찰(檢察)하게 하소서.

1. 무릇 본국 사람으로서 사신으로 나가는 사람은 국가와 군민의 사체(事體)에 관계되는 것을, 서장관(書狀官)이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는 예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써서 본관에 바치게 하되, 항식(恒式)으로 삼고, 본관으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소서.

1. 시정기는 다만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을 쓸 뿐이니, 사관(史官)된 자가 시사(時事)를 갖추 기록하는 것이 비록 그 직분이기는 하나, 견문이 미치는 바의 인물이 현부(賢否)와 득실(得失), 비밀 등의 사물을 자세히 그대로 써서 사사로이 간직하여 두었다가 수납(收納)하게 하소서.

1. 시정기 한 별을 매양 포쇄(曝曬)하는 해[年]가 돌아올 때마다 법식에 의하여 충주 사고(史庫)에 갈무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16년 11월 5일

7. 궁궐 안 여성 이야기 기록 - 여성사관[女史]

○ 태종시대

내사(內史)¹²⁾ 전가화(田嘉禾)와 해수(海壽) 등이 정씨(鄭氏)를 데리고 경사(京師)로 돌아갔는데, 그 아비 전(前) 지의주사(知宜州事) 정윤후(鄭允厚), 소환(小宦) 2인, 여사(女史)¹³⁾ 4인이 따라갔다.

- 태종실록 10년 10월 28일

○ 연산군시대

왕이 승정원에 말했다.

“궁인(宮人)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므로 비록 서책을 가져오도록 하여도 제목조차 알지 못하니 자못 뜻에 맞지 않는다. 들헌대 옛날에는 여사(女史)들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聞古有女史之屬, 而今不可復也]. 다만 궁중의 예의범절은 글을 알아 의주(儀註)를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집례(執禮)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나이가 젊고 영리한 계집을 뽑아들여 학습시켜야겠다.” […]

- <연산군일기> 10년 11월 24일

○ 중종시대

조강에 나아갔다.

《속강목(續綱目)》을 강하다가 동지사(同知事) 김안국(金安國)이 아뢰었다.

“여기에 태후(太后)와 신종(神宗)이 말한 일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이는 규문(閨門) 안의 말이라 사관(史官)으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사(女史)가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여사는 규문 안에서 임금의 거동과 언행을 모두 다 기록하므

12) 내사 : 왕명 및 대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13) 여사 : 궁궐 안 왕비와 후궁 등 일을 기록하고 관련 문서를 맡아보던 여성 관리

로 외인(外人)이 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책(史策)에 기록하여 놓음으로써 뒷사람이 선악(善惡)을 아는 것입니다. [自古女史, 於閨門之內, 人君舉動言行, 皆悉書之, 故外人知之, 而書之於策, 後人見之, 而知其善惡.]

우리나라의 경우 규문 안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은 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규문 안 임석(衽席)에서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을 어떻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고제(古制)에 따라 여사를 두어 그로 하여금 동정(動靜)과 언위(言爲)를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장령(掌令) 기준(奇遵)이 아뢰었다. “김안국의 말이 합당합니다. 임금은 깊은 궁궐 속에 거처하므로 그 하는 일을 바깥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사를 두어 그 선악을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깊숙한 궁궐 속의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지라도 감히 방과(放過)하지 못했던 것이니, 모름지기 고제에 따라 여사를 두는 것이 가합니다.”

임금이 말했다. “옛날에는 여자(女子)들이 모두 글을 지을 줄 알았으므로 올바른 여사를 얻어서 궁곤(宮壺)의 일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글에 능한 여자가 아마도 적은 것 같으니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

김안국이 아뢰었다. “여사는 반드시 글에 능해야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자를 조금 해득할 수 있다면 규문의 일을 보는 대로 기록하여, 후왕(後王)과 후현(後賢)으로 하여금 선왕(先王)은 규문 안 혼자 있는 곳에서도 잘못하는 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면 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권징(勸懲)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밖에서는 좌우에 시종(侍從), 사관(史官)이 갖춰 있으면서 안에는 여사(女史)가 없으니, 치도(治道)의 큰 흠절(欠節)입니다. 규문 안 임석(衽席)에서의 일에 대하여 후세의 자손

들이 어떠하였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시강관(侍講官) 이청(李清)은 아뢰었다. “세속의 이른바 언문(諺文)으로 기록해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어찌 문자(文字)로만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했다. “여사의 직임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니. 반드시 마음이 올바른 여자를 얻는 뒤에라야 가하다. 뿐만 아니라 사관(史官)도 모름지기 정직(正直)한 사람을 가려야 한다. 사필(史筆)을 잡는 것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중종실록 14년 4월 22일

8. 사초의 보관과 관리 _ 사초첩 훔친 자는 목 벤다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었다.

“본관(本館)에 소장한 사초(史草)는 모두 군신(君臣)의 선악(善惡)을 기록하여 후세(後世)에 가르쳐 보이는 것이오매 관계됨이 지극히 중하여, 다른 문서(文書)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초 관련) 보호대책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① 만약 사관(史官)이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을 싫어하거나, 혹 친척과 친구의 청을 들어서, 그 사적(事迹)을 없애고자 하여 사초첩[卷綜·권종]을 완전히 훔친 자는 ‘제서(制書)를 도둑질한 을(律)’로써 논죄(論罪)하여 참(斬)해야 합니다.

② 글자를 도려내거나 긁어 없애거나, 먹으로 지우는 자는 ‘제서(制書)를 폐기·손상한 죄를 다스리는 형률’을 적용하여 논죄하여 참해야 합니다.

③ 동료 관원으로서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서(制書)를 폐기·손상한 죄를 다스리는) 형률에 의하여 한 등(等)을 감(減)하고,

④ 사초(史草)의 내용을 외인에게 누설하는 자는 ‘근시관(近侍官)이 기밀(機密)의 중한 일을 남에게 누설한 을’로써 논죄하여 참할 것입니다.

⑤ 위의 사건은 비록 사면[赦宥·사유]을 받았더라도 정범인(正犯人)은 고신(告身)을 빼앗고 영영 서용하지 말되, 범인이 죽었으면 추탈(追奪)하십시오.

⑥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한 자와 누설한 자는 직첩만 회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초 관리를 엄하게 하십시오.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31년 3월 2일

9. 선배 사관 이황의 생각 - 사관이 인물과 사건을 평가하는 게 타당한가?



ITKC_MO_0144A_A030_287L_IMG

○ 김성일 : 사관 직책은 임금의 거동을 기록합니다. 당연히 용모와 말하는 기세 사이까지도 자세히 보고 기록함이 마땅합니다. 지금은 입시(入侍)하는 신하들이 모두 부복하여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대체적인 말과 행동의 큰 것은 기록하지만, 말과 기색을 살피며 기록하는 원칙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史職. 主記君舉也. 容貌辭氣之間. 亦當審視而詳記. 可也. 而今則入侍之臣. 皆俯伏不敢仰視. 若其言行之大者. 猶可記. 至於察言觀色之道則闕如. 大非記事之體也. [...]

● 이황 : 사관이 부복해 있으면 곡절을 다 기록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대가 말한 바가 참으로 옳네. 상이 즉위한 초기에는 사관만이 임금께 아뢰어 청(請)할 수 있는[啓請·계청] 게 아니었네. 시강하는 사람 모두에게

고개를 들고 앉는 것을 허락하셨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신하들이 스스로 예전처럼 부복하였네. 간혹 이를 다시 청한 자가 있었으나, 상께서 불가하다고 하므로 중지하였다고 하네. [...] 신하들 스스로가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네. 애석하네.

史官俯伏。難記盡曲折。示諭固然。上卽位初。嘗有啓請者。非獨史官。凡侍講者皆許舉頭坐。未幾。諸臣漸自成俯伏如舊。或有更以爲請者。睿旨以爲不可而止云云。 [...] 諸臣自壞之。可惜。

○ 김성일 :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게[據事直書·거사직서] 역사 기록의 원칙입니다. 대개 일에는 앞뒤의 다름이 있고 사람에겐 곧고 더러운 차이가 많이 있는 법인데, 어찌 끝 하나로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실에 따라 정직하게 기술하여 시시비비가 각자 돌아갈 바가 있게 한다면, 공과 죄가 서로 가리어지지 않고 선과 악이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여 후세의 공론이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상관(上官)으로 있는 자가 한번의 끝으로 단정하도록 독촉하기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據事直書。史法也。而今則定褒貶於一人一事之下。事有先後之殊。人多貞贛之異。何可一筆句斷。若隨事直述。使是是非非。各有所歸。則功罪不相掩。善惡不相蒙。後世之公論。仍可定矣。或欲行此法。而爲上官者。督令一筆勾斷如上云云。則如之何堅守不回。

● 이황 :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가운데에 포폄을 넣는 법이네. 《춘추(春秋)》를 쓴 성인의 필법 이외에도 모든 사관 된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켰네. 그리하여 그 가운데에 선악이 명백하게 드러난 일을 만나면 빠짐 없이 기록하였으며, 간혹 반드시 포폄을 가해 올리거나 내릴 곳이 있으면 반드시 다 포폄하였네.

지금 들은 바로는, 당초에 그 사람의 선악이 어떠하며 사실이 어떠한지를 몰라 도무지 의거할 만한 실상이 없는데도 억지로 처음 들어온 사관을 시켜 한 번의 끝으로 단정하는 말을 쓰게 하여 만세(萬世)에 전하는

정론이 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법례이겠는가. […]

據事直書。而褒貶寓其中。自春秋聖筆外。諸爲史當守此法。其間遇有善惡明著。記載無漏。而或須有當抑揚褒貶處。則又不必盡不爲褒貶也。至於今所聞者。則初不知其人善惡如何。事實如何。頓無可據之實。而強令初入之官。作爲一筆句斷之語。以擬萬世傳信之定。此何等法例也。[…]

- 이황. <퇴계선생문집> 권340. 서(書) '김사순(김성일) 문목에 답합(答金士純問目)'



ITKC_MO_0144A_A030_288H.JPG

<그림 17> 사관(史官) 직무에 대한 퇴계와 김성일의 문답

(* 출처 : <퇴계선생문집> 권340. 서(書))

10. 실록 기록방식 - 주목사(朱墨史)의 전통

○ 선조실록 사관이 평가한 한준겸

한준겸(韓浚謙)을 경상 감사로 삼았다. […]

사신은 논한다[史臣曰·사신왈]. […] 한준겸은 겉으로는 관대한 것 같으나 속마음은 사실 음험한 자로 몇 사람의 소인배와 한동아리가 되어 화의(和議)를 찬동하고 사류(士類)를 공척하였으니 나라를 그르친 죄는 또한 유성룡의 다음이라고 하겠다.

浚謙外似寬厚, 內實陰險, 與數三群小, 結爲心膂, 贊和議斥士類, 其誤國之罪, 亦成龍之亞也

- 선조실록 32년 2월 16일

○ 선조수정실록 사관이 재평가한 한준겸

한준겸(韓浚謙)을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실록》을 상고하면[按實錄·안실록] ‘관대한 것 같으나 속마음은 사실 음험한 자로 몇 사람의 소인배와 한동아리가 되어 화의(和議)를 찬동하고 사류(士類)를 공척하였으니 나라를 그르친 죄는 또한 유성룡의 다음이라고’ 하였다.

한준겸은 매우 침착하고 도량이 있어 세상에서 모두 위인이라고 칭하였는데[沈厚有器量·심후유기량 世皆稱偉人·세개칭위인], 이제 음험하다고 지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준겸이 오랫동안 외직에 나가 있었고 조정에 있었던 기간이 적었으니 ‘군소배와 심복을 맺어 화의를 돋고 사류를 배척했다.’고 한 것은 너무나 모함해 읽은 것이다. 《실록》 가운데 이처럼 반대되는 말이 매우 많으니,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 선조수정실록 32년 2월 1일

11. 사관의 역사 평가 - 사평(史評)의 유형

1. 내용 보충형

- 실록 기사에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전후 맥락을 알게 함.

1.1 성종 때 한명회 사례

사신(史臣)은 논한다[史臣曰·사신왈] : “당초에 한명회(韓明澮)가 북경에 갈 때에 임금이 당부하기를, ‘혹시라도 정동(鄭同)에게 먼저 통하지 말고 또 궁전(弓箭)을 바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한명회가 통주(通州)에 이르러 통사(通事) 장유화(張有華)를 시켜 먼저 정동에게 연락했다. 사사로이 진현할 때에 궁전을 아울러 바치므로, 부사(副使) 이승소(李承召)가 말렸으나 한명회가 듣지 않았다. 그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을 힘써 풍부하게 하여, 황제의 뜻을 기쁘게 하고 정동의 욕심을 채우고서 상을 많이 받아 가지고 돌아와 늘 남에게 자랑하였다. 이때에 와서 정동을 맞아 압구정에서 함께 놀 때에 공구(供具)를 크게 베풀어 뽐내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탄핵받아서 죄를 받은 것이다.

- 성종실록 12년 6월 26일

1.2 연산군 때 홍귀달 사례

홍귀달은 한미(寒微)한 신분에서 일어나 힘써 배워서 급제하여,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다. 성품이 평탄하고 너그러워 평생에 남을 거스르는 빛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남이 자기를 헐뜯음을 들어도 성내지 않으니, 그의 아량에 감복하는 사람이 많았다. 문장(文章)에 있어서는 곱고도 굳세고 법도가 있었다. 서사(敍事)를 더욱 잘하여 한때의 비명(碑銘)·묘지(墓誌)가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 정자에 편액(扁額)하기를 허백(虛白)이라 하고 날마다 서사(書史)를 스스로 즐겼다.

당시 정치[時政·시정]가 날로 타락해지는 것을 보고 여러 번 경연(經筵)에서 옛일에 따라 간언(諫言)을 진술하다가 임금 비위에 거슬렸다. 그가 경기 감사로 있을 때 일이다. 어떤 사람이 경영고(京營庫)의 고지기[庫直]가 되고자 왕의 총애를 받던 장녹수(張綠水)를 통해 청탁했다. 왕이 몰래 처남인 신수근(慎守勤)을 시켜서 자기 뜻을 부탁하였으나 흥귀달이 듣지 않았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으나, 결국 다른 일로 귀양을 보냈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사람들이 다 죄가 없는데 죽었다고 슬퍼하였다. 다만 일찍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에 뇌물을 많이 받았으므로 사림(士林)이 이를 비평하였다.

- 연산군일기 10년 6월 16일

1.3 인조 때 김류와 이귀 사례

사신(史臣)은 논한다 : 김류와 이귀는 반정의 공을 함께 이룩했는데도 취향은 달랐다. 붕당의 폐단을 고치려는 것이 김류의 뜻이었다면 한 파의 사람들만 채용하려 했던 것은 이귀의 주장이었다. 김류 편에서 나온 자들은 모두 김류를 명예 좋아하는 자라고 비평하였고 이귀 편으로 들어간 자는 모두 이귀를 선을 좋아한다고 여겼는데, 시비가 분분해져 소요와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나 김류가 이귀를 혐뜯는 것은 적었던 반면 이귀가 김류를 비방한 것은 많았다. 김류가 비록 고집스러워 융통성은 없었지만 명예를 바란다는 비평은 사실과 맞지 않고, 이귀가 박잡(駁雜)한 면은 있어도 선을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장점이었다. 모두 군자였지만 끝내는 서로가 의심하고 시새워하게 되고 말았다. 이귀의 사람됨은 명망이나 실체가 본디 가벼웠는데, 애석한 점은 김류의 마음가짐이 넓지 못했다는 것이라 하겠다.

- 인조실록 7년 7월 24일

2. 인물 포폄형

- 왕이나 신하들 언행의 잘잘못을 말함.

2.1 성종의 잘못된 인사를 비판한 이파(李坡)

사신(史臣)은 논한다 : 김세적의 활쏘기와 말 타는 실력은 당시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 받았으나, 학식은 없었다. 역대 조정에서 무사(武士)로서 승지(承旨)가 된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임금이 처음으로 변수(邊脩)를 승지로 삼았었다. 이어 김세적까지 승지에 제수(除授)하자, 여러 사람의 의논이 더욱 해괴(駭怪)하게 여겼다. 하지만 아무도 공적으로 말하고 이를 반박(反駁)하는 자가 없더니, 사간(司諫) 경준(慶俊)이 드러내어 놓고 말했다. “이 일은 김세적에게는 다행하겠지만, 국가에는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라고 큰소리쳤으나, 그도 또한 과감히 논박(論駁)하지는 못하였다. 뒤에 예조판서 이파(李坡)가 주상께 아뢸 일이 있어 승정원에 나아갔는데, 김세적이 왕명 출납(出納)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파가 승정원을 나와서 사람에게 말했다. “밭갈이는 마땅히 남자 종에게 물어볼 것이요, 길쌈은 마땅히 계집 종에게 물어볼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따위의 사람을 써서 승지[喉舌·후설]의 자리에 두는가?”

- 성종실록 12년 5월 26일

2.2 성종 때 성리학자 이심원 사례

사신(史臣)이 논한다 : 이심원은 독서(讀書)를 좋아하고, 옛 성현(聖賢)의 도(道)를 흡모하여, 유자(儒者)를 만나면 반드시 성리(性理)의 연원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단(異端)의 책을 찢어서 버리며, 고상한 뜻을 품고 직언을 하니, 사람들이 간혹 미친 사람으로 보기도 하였다.

- 성종실록 8년 12월 2일

2.3 명종 때 내시 최한형 비판

사신은 논한다 : 내시들의 화란(禍亂)은 참혹한 것이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곧잘 남모르는 술수를 부리니, 지혜가 있는 임금이라도 그 술수에 빠지지 않는 이가 드물다.

최한형은 승전의 책임을 맡았으니, 마땅히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결정의 시한은 비록 상의 재량에 있다 하더라도 아뢴 대로 아뢰어 주고 임금이 하교한 대로 전하는 것이 그 직분일 것인데, 중간에서 지체하여 곧바로 알려 주지 않았다. 그의 고집스럽고 오만한 정상이 이미 전부터 드러나서 중호(仲虎)가 그 잘못을 조금 말하였던 것인데, 한형이 조금도 잘못을 반성하는 빛이 없이 도리어 대간들에게 대항하였다. 그 흔적을 드러내어 상께서 의심하도록 하고서는 하문하심에 이르자 믿기 어려운 말을 꾸며내 사사로운 화풀이를 남모르게 한 것이다. 임금의 말씀이 한번 내리자 위아래가 놀라고 의혹스러워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 명종실록 14년 12월 29일

2.4 선조 때 청백리 이원익 사례

사신은 논한다 : 이때에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여 한 점의 흠이 없는 자는 참으로 많이 얻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원익 같은 사람은 성품이 충량(忠亮)하고 적심(赤心)으로 국가를 위해 봉공(奉公)하는 이외에는 텔끝만큼도 사적인 것을 영위하지 않았다.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으나 의식(衣食)이 넉넉지 못하여 일생 동안 청고(清苦)하였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도 홀로 태연하였다.

최여림(崔汝霖)은 무인(武人)이었는데, 몸가짐에 근신하고 조행이 염결하여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지키는 바가 한결같았다. 이는 문사(文士)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의 청절(清節)은 더욱 당시에 일컬어 지기에 충분하였다.

이런 몇 사람은 청백리란 명목을 붙여도 명실(名實)이 어긋나지 않을 것인데, 청백리를 낮추어 염근(廉謹)으로 하여 단지 많은 숫자만을 취했으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구차하게 충당시켰다. 심지어 간당(奸黨)인 이 유중(李有中)도 들었고, 평소 청백하다는 이름이 없는 김장생(金長生) 역시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 선조실록 34년 5월 16일

2.5 영조 때 화가 진재해 사례

신이 삼가 생각한다[臣謹按·신근안] : 세상 사람들은 송(宋)나라 상안민(常安民)이 현명하다고 칭찬한다. 그런데 상안민은 이미 세진 당비(黨碑)에서 자기 이름만 빼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 진재해가 굳게 거절하여 아예 손을 대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누가 더 낫겠는가? 옛날에 주자(朱子)는 올바른 의견[清議·정의]이 아랫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을 근심하였는데, 요즘은 올바른 의견이 신분이 미천한 화가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 영조실록 1년 4월 21일

3. 제도나 법 폄훼

- 과거제도, 사면제도, 의적 등에 대한 사관의 생각을 기록함

3.1 중종 때의 잣은 사면제도 비판

사신은 논한다 : 여기에서 풍속의 야박함과 자주 사면한 폐단을 엿볼 수가 있다. 나라 다스리는 자는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 중종실록 3년 1월 30일

3.2 명종 때 과거제도 공정성 비판

사신은 논한다 : 신사헌을 삭과한 일은 참으로 일시(一時)의 공의(公議)로 결정한 것이니 자식이 원통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고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대신은 자기가 한 말을 바꾸고 대간은 그 일을 덮어두고 있다가 복과의 의논이 이미 결정된 뒤에 비로소 나와 다투었으니 이런 식으로 국가를 도모하면 어떻게 국시(國是)를 정하겠는가. 과연 구신(具臣)이라 하겠다.

사신은 논한다 : 국가의 공도는 다만 과거 한 가지 일에 있을 뿐인데 사사로운 피를 써서 대정(大庭)의 책문(策問)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정사룡이 재물을 탐냈고 나중에는 심동원과 이양의 무리가 그 자제들을 시켜 복과를 진소(陳疏)하게 했다. 그러나 인관(言官)으로 있는 자들이 끝내 그 잘못됨을 교정하지 못하였으니 과연 국가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신사헌은 삼가(三家)의 종이다. 뜻을 얻은 뒤에는 간사한 무리들과 그 집에 출입하며 못하는 짓 없이 사림(士林)을 모함하였으니 통탄할 일이다.

- 명종실록 15년 4월 20일

3.3 명종 때 도둑 임꺽정 평가

사신은 논한다 : 국가에 선정(善政)이 없고 교화가 밝혀지지 않아 재상들의 횡포와 수령들의 포학이 백성들의 살과 뼈를 깎고 기름과 피를 말려 손발을 둘 곳이 없고 호소할 곳도 없었다. 기한(飢寒)이 절박하여 하루도 살기가 어려워 잠시라도 연명(延命)하려고 도적이 되었다면, 도적이 된 원인은 정치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의 죄가 아니다.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근본을 생각해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준경은 외람되어 재상 지위에 앉아서 인(仁)을 행하는 방도를 연구하여 힘써 교화(敎化)의 정치를 거행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조그마한 생쥐 때문에 천균(千鈞)의 쇠뇌를 쏴려고 하니, 어쩌면 그리 오판(誤判)하는가. 황해도의 도적이 비록 방자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무리는 8~9명에

지나지 않으며,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다.

깊은 산골에 나누어 숨어 붙잡을 만한 자취도 없고, 적국(敵國)이 진을 치고 침입하여 교전할 수 있는 것과도 다르니, 비록 네 도의 병력을 합하여 일시에 책응(策應)하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착수하겠는가. 흉년과 세금으로 백성들이 지쳐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는 형편인데, 또 군대를 일으켜 변방에 오래 머무르게 하여 재물을 많이 허비해서 공사(公私)의 재정이 모두 고갈되게 하고 거기다가 주장(主將)의 횡포와 군졸(軍卒)의 침탈을 더한다면, 백성이 어떻게 살겠는가. 이는 네 도의 백성을 모두 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임꺽정을 비록 잡더라도 종기가 안에서 곪아 혼란이 생길 것인데, 더구나 임꺽정을 꼭 잡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 않은가. 전일의 군대가 공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이미 본보기가 되는데도, 이준경은 임금의 뜻만 따르고 상진(尙震) 등은 구차히 동조하며 정승[臺司]들은 입을 다물고만 있다. 나랏일이 날마다 그르게 되어 가는데도 구원하는 자가 없으니,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다.

- 명종실록 16년 10월 6일

3.4 사평에 대한 사평

사신은 논한다 : 민진원은 성품이 집요(執拗)한데다가 당(黨)에 대한 병통이 가장 고질이었다. 그러나 벼슬에 있으면서 청렴하고 검소한 것으로 일컬어졌다. 효장 세자(孝章世子)가 흥서(薨逝)했을 적에 원임 대신(原任大臣)으로 입대(入對)하여 송 인종(宋仁宗) 때의 고사(故事)처럼 종신(宗臣)을 간택하여 양육할 것을 청하였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였다고 했었다.

신이 삼가 생각한다[臣謹按·신근안] : 민진원은 폐부(肺腑)처럼 가까운 친척으로 시례(詩禮)의 교훈을 받았다. 조정에 벼슬하여서는 유독 풍재(風裁)를 지켰으므로 명망이 일시에 무거웠었다. 신축년·임인년에 화환

(禍患)이 일어났을 적엔 멀리 귀양 갔었다. 을사년에 제일 먼저 정승에 임명되자, 상소[袖箚·수차]를 올려 경종(景宗)에게 병환이 있었다는 것을 중외에 반시(頒示)하여 저사(儲嗣)를 세운 의리를 밝힐 것을 청했었다. 이때 반대파들에게 크게 공척(攻斥)을 받았다. 그래서 정미년 이후에는 마침내 조정에 있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 이광좌(李光佐)와 함께 동시에 치사(致仕)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서(卒逝)하였다. 그런데 사신(史臣)이 집요한데다가 당에 대한 병통이 있다고 기록한 것에서도 이광좌의 무리들이 기필코 비난하여 혈뜯으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 영조실록 12년 11월 28일